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8월  
석사학위 논문

『繼後臚錄』을 통해 본 17世紀 초 立後 양상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이 지 애

『繼後臚錄』을 통해 본 17世紀 초 立後 양상

Adoption aspect in the early 17th century  
through Gyehu Deungrok(繼後臚錄)

2019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이 지 애

『繼後臚錄』을 통해 본 17世紀 초 立後 양상

지도교수      최   진   규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이 지 애

## 이지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이정선 (인)</u>
위원	전남대학교 교수	<u>박미선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최진규 (인)</u>

2019 년 5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차

ABSTRACT .....	VII
I. 머리말 .....	1
II. 立後法の 제정과 『繼後謄錄』 .....	4
1. 立後法の 제정 .....	4
2. 『繼後謄錄』 .....	14
III. 17세기 초 立後 양상 .....	23
1. 立後 절차 .....	23
2. 立後와 罷繼 .....	34
IV. 맺음말 .....	41
참고문헌 .....	43

## 표목차

[표 1] 『繼後膾錄』 .....	15
[표 2] 『繼後膾錄』 卷1·2의 기사 .....	18
[표 3] 養父와 生父의 관계 .....	20
[표 4] 청원자에 따른 立後 건수 .....	23
[표 5] 忠節者·宗親·功臣의 立後 .....	28
[표 6] 繼後子の 次序 .....	30
[표 7] 妾子와 獨子를 立後한 사례 .....	31
[표 8] 奉祀와 관련된 사례 .....	34

## ABSTRACT

### Adoption aspect in the early 17th century through Gyehu Deungrok(繼後膽錄)

Lee JiAe

Advisor : Prof. Choe ChinKyu

Major in Translation of Sino-Korean Classic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gnatic adoption patterns that began to increase in the early 17th century through the Gyehu Deungrok(繼後膽錄).

‘Gyehu deungrok’ was drafted to be used as reference in the future by recording the fact of agnatic adoption by Yejo (the Ministry of Rites). Agnatic adoption was the act of a person who did not have a son to adopt another person’s son to succeed him and his household and it was carried out through the agnatic adoption provisions set in the ‘Gyeongguk Daejeon’. Agnatic adoption was usually registered by the foster father or foster mother. This was in accordance with the Agnatic Adoption Law and it was recognized as general successorship. However, there were also many cases where agnatic adoption was applied for by the biological father or other biological family members, and in this case, Yejo categorized it as a non-judicial action.

It was common to select the successor to be the second or third son of a relative with the same last name. However, there were also cases in which the successor was chosen from the extramarital son or only son of a relative with the same last name. In the case of the only son, it was not allowed for him to become the successor of another person according to the Agnatic Adoption Law, but agnatic adoption was allowed when it was an application for the purpose of ancestral



rituals.

The purpose of agnatic adoption at that time was to hold ancestral rituals for the foster home. But becoming a successor through agnatic adoption alone did not mean that one would be in charge of the entire ancestral rites of the foster home. Up until the early 17th century, when an issue occurred with the selection of the person holding the ancestral rites of the foster home, the biological grandchildren would be in charge of the ancestral rites by Yejo.

Just as there was agnatic adoption for holding ancestral rituals for the foster home, there was also successor-releasement to hold ancestral rites of one's biological ancestors. Successor-releasement allowed to dissolve the adoption and made the adopted child return to their biological home and hold ancestral rites for them. This was usually carried out by the biological father or other family members at the house of birth. Just as agnatic adoption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Agnatic Adoption Law, successor-releasement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royal decree enacted in 1554 (9year of Myeongjong).

Meanwhile, there were cases when the ancestral rites were entrusted to extramarital sons because the existence of extramarital sons was a reason not to allow agnatic adoption. When ancestral rites were entrusted to extramarital sons, they attempted to protect these rights of extramarital sons by being issued ancestral rite documents as there were possibilities of being violated of these rights because of their status.

This study examined the agnatic adoption patterns in the early 17th century through 'Gyehu deungrok'. Agnatic adoption in the early 17th century was process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not only relatives with the same last name, but also relatives with the different last name, and general agnatic adoption that complied with the agnatic adoption provisions accounted for the majority. However, with the increase of agnatic adoption, agnatic adoption applicants expanded to biological fathers and relatives with the same last name, and successors also became more diverse.

## I. 머리말

조선은 성리학과 함께 적장자를 중심으로 제사와 가계를 계승시키는 宗法을 받아들여<sup>1)</sup> 적장자를 통한 가문의 계승을 매우 중요시 했으며, 적장자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적장자는 제사를 모시는 역할 뿐 아니라 가문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동성 친족의 支子를 아들로 들여 본인의 뒤를 잇게 한 立後를 행했다. 이러한 입후는 『經國大典』의 立後條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정은 이를 통해 입후의 과정에 철저히 관여했다.

그러나 입후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였다. 17세기 이전의 조선은 아들이 없더라도 굳이 후사를 들이지 않고 고려시대처럼 收養과 侍養·異姓 養子女 등을 통해 봉사를 받았다. 재산의 경우에도 자녀의 성별이나 태어난 순서 등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상속해주었다. 이처럼 고려의 관습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입양의 목적이 자신의 제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가계계승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sup>2)</sup> 그러나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朱子家禮와 朱子學이 수용되면서<sup>3)</sup> 신진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들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多妻제도를 정비해 一夫一妻制의 원칙을 만들어 妻妾의 구분을 두고 嫡庶의 차등을 두었다.<sup>4)</sup>

부계중심 가족제도를 위한 정책의 정비와 더불어 가문을 잇기 위한 행위인 입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전까지의 입양은 가계를 계승한다는 관념보다는 사후에 봉사를 받기 위해서라는 관념이 더 강했다.<sup>5)</sup> 그렇기 때문에 父系와 母系·妻系를 따지지 않고 혈연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식으로 삼을 수 있었고, 심지어 혈연적 관계가 없더라도 자식으로 삼을 수 있었다.<sup>6)</sup> 하지만 이는 부계 중심 사회를 건립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조정은 세종 19년 立後法을 제정하여 父系 동성 친족의 둘째아들 이상만 입후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부계 중심의 가계 계승을 정착시키려 했다.

1) 최연숙,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4, p.131.

2)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두산동아, 2009.

3) 정궁식, 「朝鮮時代의 家系繼承法制」, 『서울대학교 법학』 51권, 2010, p.70.

4) 이상백, 「嫡庶差等の 淵源에 대한 一問題」, 『진단학보』 1권, 1934; 박용옥, 「朝鮮太宗朝 妻妾分辨考」, 『한국사연구』 14권, 1976; 허홍식, 「高麗時代의 夫妻形態와 그 變遷」, 『고려사회사연구』, 1981; 장병인, 「고려시대 혼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990; 배재홍, 『조선후기의 庶孽 許通과 身分地位의 변동』,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5.

5) 정궁식, 「朝鮮時代의 家系繼承法制」, 『서울대학교법학』 51권, 2010, p.93.

6) 박경,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해안, 2011, p.89.

이 법은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경국대전』의 입후조에 수록되었고 조선 말기까지 입후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졌다.

그 동안 입후의 정착과 확산 경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며,<sup>7)</sup> 17세기 이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입후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연구는 가문에서 가지는 계후자의 위상 변화, 입후의 확산 및 계층별 수용 양상, 가문 별 입후와 문중 내부의 갈등, 罷繼의 양상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sup>8)</sup> 입후의 참고자료로 활용된 『계후등록』도 입후제도와 가계계승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많이 활용되었다. 고민정은 입후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가계계승을 연구하면서 『계후등록』을 살펴보고, 『계후등록』의 기술방식과 『別繼後臚錄』의 특징을 정리하며 법외계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에 계승방법으로 널리 활용된 입후를 고찰해 가계계승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조선후기 사회구조를 구명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입후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된 입후의 증빙 자료였던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의 기술방식 및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가문의 요청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운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sup>9)</sup> 이 연구를 통해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가계계승에 대한 인식 강화에 따른 입후의 진행양상과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박경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계후등록』에 수록된 18세기의 罷繼 사례에 집중해 계후와 관련된 법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장서각 소장 『계후등록』이 1718년(숙종 44)에서 1732년(영조 8)까지 114건의 기록이 실렸는데, 이중 87건의 기록이 파계와 관련된 자료라며 당시 파계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파계의 행정을 본생부모의 후사가 끊긴 경우,

7) 입후문화와 관련된 연구에는 『國朝榜目』, 『司馬榜目』, 호구자료 및 족보 등이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된 논문은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1983; 마크피터슨 저, 김혜정 역, 『儒敎社會의 創出』, 일조각, 2000; 박수미, 「양자제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가족구조와 가계계승」, 『한국인구학』 30권, 2007;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현실』 73권, 2009 등이 있다.

8) 17세기 이후의 입후와 관련된 논문은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권, 2008;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현실』 73권, 2009; 마크피터슨 저, 김혜정 역, 『儒敎社會의 創出』, 일조각, 2000; 박미혜, 「17세기 養子의 제사상속과 재산상속」, 『한국사회학』 33권, 1999; 박종천, 「조선 후기 유교적 가족질서의 확산과 의례적 양상-立後와 入養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132권, 2012; 허원영, 「한말 한 종가의 立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 東萊鄭氏 鄭蘭宗 종가의 고문서 자료를 통한 재구성」, 『사회와역사』 75권, 2007 등이 있다.

9)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研究-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別繼後臚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13권, 2014; 「조선후기 입후 방식과 계후자의 항렬에 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34권, 2015.

소목에 합당하지 않은 계후의 경우, 본생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입안을 발급 받은 경우, 총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sup>10)</sup> 이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계후등록』 1, 2권에 나타나는 과거의 원인 또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상우는 『계후등록』의 정보와 족보에서의 입후 정보를 비교분석하며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을 연구하였다.<sup>11)</sup> 이밖에도 일정한 부분만을 가지고 통계를 내 연구에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자료로 사용하거나, 소장처에 따라 구분되어 연구되었다.<sup>12)</sup> 이처럼 『계후등록』을 활용한 연구는 가계계승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조선후기에 집중되었다.

입후가 17세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입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조선후기, 그 중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집중돼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계후등록』을 통해 입후가 증가하기 시작한 17세기 초반의 입후양상과 실태에 대해 검토를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입후의 기준이 된 입후법의 제정과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 후 17세기 초반의 기록인 『계후등록』 권1, 2에 대한 재고찰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후 사례를 통해 당시 행해진 입후의 양상을 일반 계후, 법외 계후, 과거 등을 통해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계후등록』은 조선 후기에 행해진 입후의 기사들을 수록한 사료이다. 이는 예조에서 입후 증빙 문서인 계후입안을 발급해 준 후 그 사실을 간략하게 적어 보관한 것이다. 국가에서 편찬하여 보관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이 소장한 계후입안에 비해 내용적으로 풍부하여 입후의 양상을 파악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17세기에 증가하기 시작한 입후의 양상과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계후등록』 권1, 2의 재검토를 통해 두 권의 기록이 연속된 기록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10) 박경, 「과거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장서각 소장 『繼後謄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25권, 2011.

11) 한상우,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고문서연구』 51권, 2017.

12) 박미혜, 「17세기 양자의 제사상속과 재산상속」, 『한국사회학』 33권, 1999; 마크피터슨 저, 김혜정 역, 『儒敎社會의 創出』, 일조각, 2000.

## II. 立後法の 제정과 『繼後謄錄』

17세기 이후 조선의 가계 계승은 부계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이는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일본과 비교했을 때 조선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중국 明·淸 시대의 가계 계승은 嫡子뿐 아니라 庶子를 통해서도 이어졌으며, 양자를 통해서도 계승되었다. 양자의 경우, 그 대상은 同姓이나 부계의 친족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물론 異姓 양자의 입양을 정부에서 금지했지만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일본 에도시대의 가계 계승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신분이 자식들 중 한명에게만 계승되는 단독 계승 방식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가계 계승은 부계를 통해서만 이어지 않았다. 부계 친족인 손자·형제·조카·從弟·숙부는 물론 이성 친족인 사위·매제·손자사위를 통해서도 가계가 계승되었다.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성의 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하기도 했다.<sup>13)</sup>

반면 조선의 가계 계승은 철저히 부계를 통해서만 이어졌다. 조선 전기까지 성행했던 이성 양자의 입양과 외손을 통한 봉사의 경우에도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할 뿐 가계를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sup>14)</sup> 17세기 이후부터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 立後法을 통해 동성 친족의 아들을 입후해 부계 중심의 가계를 계승해나갔다.

### 1. 立後法の 제정

#### 1) 立後法の 제정 과정

17세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입후는 『경국대전』의 입후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전에 실린 입후조는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입후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입후를 규정한 제도가 조선시대에 처음 마련된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에도 입후와 관련된 처벌 및 금지 규정이 존재했다. 『高麗史』의 刑法志에는 異姓 養子の 입양과 昭穆

13) Waltner, Ann Beth, "Getting an heir: Adoption and the construction of kinship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坪内玲子, 『繼承の人口社會學』, ミネルヴァ書房, 2001; 한상우,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고문서연구』 51권, 2017, p.192.

14)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에 묻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두산동아, 2009, p.105.

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의 입양에 대한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 또 남편측 동성 친족의 아들이 아니거나 소목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양자로 들인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있었다.<sup>15)</sup> 그러나 이성 양자에게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大功服을 입게 한 규정이 있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이성 양자의 입양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었던 것 같다.<sup>16)</sup> 즉, 고려의 이성 양자 입양 금지 규정은 唐律을 수용해 만든 형식적인 법이었을 뿐 실효성은 없던 규정인 것이다.<sup>17)</sup> 이처럼 입양의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양자를 입양한 것을 보면 고려의 가계 계승은 부계로만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sup>18)</sup>

조선 전기까지도 고려처럼 아들이 없을 경우 수양과 시양을 행하거나 異姓의 양자녀를 통해 봉사를 받는 등 대상과 목적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입양이 행해졌다. 이러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입양은 가계 계승의 목적보다 자신이 죽은 후 제사를 받기 위한 사후 봉사의 개념이 더 강했기 때문이었다. 재산 상속 또한 자녀의 성별이나 태어난 순서에 상관하지 않고 균분 상속을 행했다. 다만 제사를 지낼 자식에게는 奉祀條 또는 承重條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재산을 더 상속해 주었다.<sup>19)</sup> 또 딸이나 외손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더라도 후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 말~조선 초인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주자가례가 수용되면서<sup>20)</sup> 신진사대부들을 중심으로 가묘를 설치하고 일부일처제도를 정비하는 등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만들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과 함께 16세기부터 재산 상속과 봉사에도 변화가 나타나 가문별로 봉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재산을 모두 균분 상속을 할 경우 후손들이 제사와 拜墓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sup>21)</sup>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반의 시기에 사위들은 처가의 봉사를 기피하기 위해 처가로부터 받은 재산을 환급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이 시기는 균분 상속과 차등 상속의 과도기라 할 수 있다.<sup>22)</sup>

15)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戶婚, “養異姓男與者 笞五十養從一年…”; “文宗二十二年, 制, ‘凡人無後者, 無兄弟之子, 則收他人三歲前棄兒, 養以爲子, 卽從其姓, 繼後付籍, 已有成法. 其有子孫, 及兄弟之子, 而收養異姓者, 一禁.’”; 制, “禁以伯叔及孫子行者, 爲養子”.

16) 『高麗史』 卷64, 志18, 禮6 “仁宗十四年二月 制, … 異姓族人之子收養者, 服喪之制, 禮雖無據, 恩義俱重, 不可無服, 其令服大功九月四十九日”.

17) 박경, 「15세기 立後法の 운용과 繼後立案」, 『역사와현실』 59권, 2006, p.132.

18)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1983; 노명호,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8; 이종서, 『14~16세기 韓國의 親族用語와 日常 親族關係』,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19) 마더피터슨저, 김혜정 역, 『儒敎社會의 創出』, 일조각, 2000.

20) 정궁식, 「朝鮮時代의 家系繼承法制」, 『서울대학교법학』 51권, 2010, p.70.

21) 정궁식, 「16세기 봉사재산의 실태」, 『고문서연구』 9·10 합권, 1996.

22)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들이 없는 사람들이 입후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입후의 기준이 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후 봉사가 목적이었던 입양과는 달리 입후는 가계의 계승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방식과 대상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다. 입후에 대한 첫 논의는 1434년(세종 16) 良妾子로 承重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승중은 죽은 사람의 신주를 받드는 행위를 통해 그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 이는 가계계승과도 연결되는 일이었으며, 승중하는 자에 따라 가문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에 禮曹左參判 權蹈는 良妾이라도 천민과 다름이 없으니 첩자로 승중한다면 宗社를 이었다 할지라도 끊어진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첩자의 승중을 반대하였다. 또 이미 族屬을 구별하는 습속이 생겨 동생의 아들을 버리고 첩자를 종손으로 세운다면 가문의 종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조상들도 어찌 생각할지 모른다고 하였다.<sup>24)</sup> 권도가 첩자의 승중을 반대한 이유는 일부일처제도의 성립으로 적자와 첩자 간의 차별이 생겨 첩자를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25)</sup> 그 결과 1437년(세종 19)에 《喪服通禮》, 《性理大全》 등을 근거로 하여 立後法이 제정되었다. 당시 제정된 입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부터는 옛 제도에 의하여 大夫와 士의 집에서 후사가 없거든 同宗의 적자 외에 지자를 세워 후사를 삼되, 지자 중에서 세우고자 하는 바에 따르기를 허락하고, 또 여러 族孫 중에서 골라서 세우는 것도 가하다. 후사가 된 자는 모름지기 양 집안의 아버지가 모두 있어 함께 명한 뒤에야 出後할 수 있게 한다. 입후하는 집에 비록 아버지가 없을지라도 만약 그 어머니가 원한다면 허락하되 나라에 고하여 세운다. 功德이 있는 사람과 大臣·宗室·賢者의 후사를 특명으로 세우는 경우에는 비록 두 집에서 모두 부모가 없을지라도 이 예에 있지 않는다. 무릇 입후한 자는 일체의 家事에 친아들처럼 여기고 입후된 자도 친자와 같이 한다. 養親 및 私親을 위하는 喪制는 모두 옛 법을 따른다. 그 형제와 尊屬은 비록 동종이라도 후사가 되지 못하며, 異姓은 비록 아들로

23) 고민정, 「17~18세기 嫡孫承重에 관한 일고찰」, 『조선시대사학보』 67권, 2013, p.371.

24) 『世宗實錄』 卷64, 世宗16年 4月 16日 癸亥 2번째 기사, “禮曹左參判權蹈議曰:…今之稱良者, 等級非一, 有雖非衣冠閥閱之裔, 而有上下內外之別者, 有雖無上下內外之別, 而世爲平民者, 有身非賤而與賤不異者, 至若驛吏補充軍, 亦通謂之良. 本朝甄別族屬, 習俗已久. 衣冠閥閱之家, 舍母弟之子, 而立其妾產, 雖有上下別內外者之子, 猶以爲不可, 況如與賤不異者之子, 概謂之良人而立之, 其肯宗而敬之乎? 不獨不爲一族之所宗, 其祖考之心, 亦未可知也. 孝子不死其親, 立宗所以尊祖. … 雖曰續宗, 實則絕之也”.

25) 박경, 「15세기 立後法の 운용과 繼後立案」, 『역사와현실』 59권, 2006, p.136.

삼았을지라도 사당을 세우지 못한다. 生父母와 本宗에 대한 복은 모두 낮추지 아니한다.<sup>26)</sup>

이를 정리해보면 입후의 대상자는 동성 친족의 지자 또는 族孫이며, 입후의 방법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라에 고해야 했다. 이는 『경국대전』 입후조 성립에 기반이 되었다. 이로써 입후의 방식과 입후의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이 입후법에는 후사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일부일처제로 인해 妾을 妻보다 한 단계 낮게 여겼고 첩의 자식인 庶子 또한 친한 이의 자식으로 여겨졌다. 이는 위에서 기술했던 권도의 입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첩자를 후사로 삼는 것을 꺼려 첩자가 없다고 속이고 동종의 지자를 입후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같은 경우는 端宗 즉위년(1452)에 申自謹이 申允寬을 입후하려 하면서 공론화 되었다. 신자근은 아버지의 유서를 근거로 들며 신윤관의 입후를 요청했다. 그러나 議政府와 禮曹에서는 법을 근거로 삼으며 불가하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품 이상으로 賤妾子로 승중하는 자는 司律院 등 여러 司에 入屬시켜 從仕하게 하였으니, 친첩의 아들로 승중하는 법이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비록 遺書가 있을지라도 한 집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국법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물며 신효창의 유서에, ‘다시 장가들어도 후사가 없거든 어진 자를 골라서 제사를 받들게 하라’고 했는데 이는 비록 첩자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동생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서를 남긴 후에 첩자를 두었으니, 이제 그 아들을 버리고 동생의 아들을 세우는 것은 진실로 근거가 없습니다.<sup>27)</sup>

의정부와 예조의 입장은 이미 친첩자로 승중하는 법이 세워졌으니 다른 이의 아들로

- 26) 『世宗實錄』卷77, 世宗19年 6月 3日 辛酉 1번째 기사, “自今依古制大夫士之家無嗣者, 以同宗適子外支子, 立以爲後, 諸支子中, 許從所欲立者, 且於諸族孫中, 擇而立之亦可. 其爲人後者, 須兩家父皆在同命之, 然後方可出後. 立後之家雖無父, 若其母願之, 則許告於國而立之. 其有功德及大臣宗室賢者之後, 特命立嗣者, 雖兩家皆無主者, 不在此例. 凡立後者, 一應家事, 皆如己子, 爲後者, 亦如親子. 爲所後者及爲私親喪制, 一從古法. 其兄弟及屬尊者, 雖同宗不得爲後, 異姓雖有作子者, 不得立祠堂. 其爲所生父母及本宗服, 皆無降. 以此定爲永制”.
- 27) 『端宗實錄』卷3, 端宗卽位年 9月 28日 丁巳, 3번째 기사, “二品以上賤妾子承重者, 司律院等諸司入屬從仕, 則賤妾子承重之法已立. 雖有遺書, 不可以一家之私, 毀國憲, 況孝昌遺書, 改娶猶無後, 則擇賢承祀, 非謂雖有妾子, 必以弟之子立後也, 遺書之後, 果得妾子, 今捨其子, 而立弟之子, 固無所據”.



입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신희창의 유서가 반드시 입후를 통해 후사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며 첩자로의 승증을 주장했다. 단종은 의정부와 예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자근에게 첩자로 승증할 것을 명했다. 이 논의로 첩자도 친자라는 사실이 강조되었고, 이후 첩자가 있으면 입후 할 수 없는 원칙이 생기는 바탕이 되었다.

여러 대에 걸친 논의로 입후법이 정비되고 입후의 원칙이 생겼지만 양부와 입후 대상자간의 항렬이 또 다른 문제로 등장했다. 당시에는 왕실에서도 廣平大君을 李芳蕃의 후사로, 錦城大君을 李芳碩의 후사로 삼는 등 손자가 할아버지 항렬의 입후자가 되는 것이 흔했다.<sup>28)</sup> 그러나 손자 항렬로 계후하는 것은 昭穆을 어지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1479년(성종 10) 申孝昌의 계후 건으로 공론화 되었다.<sup>29)</sup> 논의 결과 1481년(성종 12) 손자항렬의 입후를 금지한다는 수교가 내려졌다.<sup>30)</sup> 수교가 내려지자 수교 이전 손자항렬로 입후가 된 건들이 문제가 되었다. 소급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종은 왕실에서도 손자 항렬로 입후한 경우가 많았고, 이를 다 고칠 수 없으니 수교 이후의 건들만 문제 삼기로 하고 수교의 내용을 대전에 첨부하기로 결정하였다.<sup>31)</sup>

이로써 입후의 기준이 되는 『경국대전』의 입후조가 완성이 되었다. 『경국대전』에 실린 조항은 조선후기까지 입후의 기본 원칙으로 활용되었다. 입후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官에 고하여 同宗支子를 세워 후사로 삼는다.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해 세운다.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머니가 관에 고한다. 尊屬과 형제 및 손자는 서로 후사로 삼지 않는다.)<sup>32)</sup>

28) 『世宗實錄』 卷77, 世宗19年 6月 3日 辛酉 2번째 기사, ; 『成宗實錄』 卷69, 成宗7年 7月 11日 壬子 4번째 기사.

29) 『成宗實錄』 卷107, 成宗10年 8月 11日 甲午 1번째 기사.

30) 성종 12년에 손자 항렬의 입후를 금지하는 수교가 내려졌음은 金孝盧의 소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정구복외, 『朝鮮前期古文書集成』, 국사편찬위원회, 1997)

31) 『成宗實錄』 卷166, 成宗15年 5月 26日 壬子 1번째 기사, “先是, 金孝之以四寸孫孝盧爲繼後子. 至是, 禮曹啓: “昭常爲昭, 穆常爲穆, 昭、穆不可紊亂. 孝盧以孫繼祖, 昭、穆紊矣, 宜勿聽. 然前此如此立後者, 多不可一一追改. 請自立法後, 一皆禁斷, 且於《大典》添錄.” 傳曰: “如知其非, 則雖已前立後者, 皆當改正. 其以此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韓明澮、沈澮、尹壕議: “祖孫、兄弟不相爲後, 已有古法, 本朝亦依此, 已有受教立法. 則非但金孝盧, 在前(阻)孫爲後, 亦違禮制, 不可垂示後世. 竝改正何如?” 尹弼商議: “支子別作一宗, 則衆子孫不與焉, 何有紊亂昭、穆之序乎? 若以爲非, 則李德根 烈山正之事, 亦當追改. 自今爲限, 何如?” 洪應議: “在祖宗朝, 如廣平大君爲懋安君後之類, 豈能盡追改也? 以當代立後者, 更議何如?” 傳于承政院曰: “予之初意, 已前立後者, 竝欲追改. 今更思之, 幽、明無異, 若奪而不祀, 則已享之神, 終無血食之處, 主祭之人, 無復有奉祀之心. 情理乖戾, 無乃不可乎? 依禮曹所啓, 何如?” 僉曰: “上教允當”.

32) 『經國大典』 卷3, 禮典, 立後條 “嫡·妾俱無子者告官, 立同宗支子爲後.(兩家父同命立之, 父歿, 則母告

『경국대전』의 편찬 이후 입후조의 규정에 따라 입후가 진행되었고 증빙 문서인 계후 입안도 발급되었다. 입후를 요청한 자들은 적자와 첩에게 아들이 없음을 명시하였으며, 예조에서는 입후조를 근거로 하여 계후입안을 발급해주었다. 또 입안의 끝에 이 규정을 명시하였다. 규정을 살펴보면 입후의 대상자는 동성 친족의 지자였으며, 향렬에 맞지 않는 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입후를 행하는 자는 양쪽 집안의 아버지였으며,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법전의 규정으로 향렬이 중요시 되었지만 여전히 次養子를 들이거나 조카 향렬의 백골양자를 통해 손자 향렬로 자신의 뒤를 잇게 하는 등 변칙이 존재했다.

대전의 반포로 입후제도가 안정이 되는 듯 했으나 첩자에 대한 인식이 또 다른 문제가 되었다. 입후조에 따르면 적자와 첩자가 모두 없어야만 입후가 가능했다. 하지만 첩자로의 계승을 꺼린 자들이 첩자가 있음에도 없다고 속이며 다른 이의 아들로 계후하는 경우가 생겼다. 결국 1536년(중종31)에 “적자는 없으나 첩자만 있는 자가 嫡族의 疏遠한 자로 후사를 삼는다면 첩자가 있는 것과 후사가 없는 것이 같으니 대전에 의거해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만 계후를 허락하라”는 수교가 내려졌다.<sup>33)</sup> 이 수교는 1553년(명종 8) “적장자에게 첩자가 있을 경우, 친아우의 아들이 아니면 계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수교<sup>34)</sup>로 고쳐졌다. 첩자가 있으면 입후할 수 없다는 규정이 동생의 아들로는 입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수교들은 국왕이나 신하, 각 관서에서 발의한 내용을 고위 신료들이 논의하여 정리하고, 下教·教旨·傳敎라는 형식의 왕명으로 각 관서에 내려져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수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현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만일 수교가 내려진 이후의 상황에서 신·구 수교가 충돌할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했고, 상위법인 『경국대전』과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행하였다.<sup>35)</sup>

官.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

33) 『受教輯錄』 卷3, 禮典, 立後條 “無嫡子而有妾子者, 以嫡族之疎遠者爲後, 則有妾子者與無後同, 依大典, 嫡妾俱無子者, 乃許繼後.嘉靖丙申承傳”.

34) 『受教輯錄』 卷3, 禮典, 立後條 “嫡長子有妾子者, 非同生弟之子, 勿許爲後.嘉靖癸丑承傳”.

35) 구덕희, 「법전으로 역사읽기-輯錄류 법전의 성격-」, 『역사와현실』 46권, 2002, p.46.

## 2) 立後法の 변화

1485년(성종 16)에 『경국대전』의 최종본인 『乙巳大典』이 완성되어 여러 제도들이 대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규정이 후기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로 정해진 제도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입후법 또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으며 시대에 맞게 변형되기도 했다.

입후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친자와 계후자 간의 가계계승 문제였다. 입후를 한 후 친자가 태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이 경우 가계계승을 친자와 계후자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명종대부터 현종대까지 논의가 되었다. 명종대의 논의는 1553년(명종 8) 李堉의 후계 논의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선은 후사가 없어 동성 친족의 지자인 李漢垣을 입후했지만 후처에게서 친자를 낳았다. 이선이 죽은 후, 그의 처 이씨는 계후자 이한원의 파계를 요청하며 자신의 아들로 가계를 계승하고자 했다. 예조에서는 파계를 허락했으나 사헌부에서는 대의가 정해지면 파계할 수 없다면 반대했다.<sup>36)</sup> 이에 명종은 사헌부의 입장에 따라 파계를 불허했다. 또한 “친자가 태어날 경우, 친자에게 가계계승을 맡긴다. 계후자는 衆子로 여기며 어지러이 파계하지 않는다”는 수교<sup>37)</sup>를 내리며 가계 계승에서 친자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친자를 출생할 경우 가계의 계승은 계후자가 아닌 친자가 맡게 된 것이다.

선조대의 논의는 柳師商 집안의 분쟁을 통해 알 수 있다. 柳師商은 명종대에 첩자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파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大明令의 ‘繼後한 후에 아들을 낳으면 親子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고, 계후한 아들은 衆子가 되어 형제와 같이 한다’는 조문에 따라 파계하지 못하고 첩자에게 봉사를 맡기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후 유사상의 첩자와 계후자 柳和 간에 재산 분쟁이 발생하면서 유화는 계후자가 아닌 시양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선조는 가문의 봉사를 첩자에게 맡기고, 유화는 시양자로 간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sup>38)</sup> 선조의 결정은 대명령의 ‘가산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말과 『경국대전』의 ‘3세 전에 수양한 아들은 친아들과 같다’는 법에 따른 것이다.<sup>39)</sup>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상 가문의 일이 계속 논의가 되자 1581년(선조 14) 선조는 ‘친아들이 있

36) 『明宗實錄』 卷14, 明宗8年 4月 17日 壬辰 1번째 기사.

37) 『受教輯錄』 卷3, 禮典, 立後條 “立嗣之後, 却生親子, 則親子當奉祭祀, 而繼後子, 論以衆子, 毋得紛紜罷繼. 嘉靖癸丑承傳”.

38) 『宣祖實錄』 卷14, 宣祖13年 10月 16日 壬子 1번째 기사.

39) 『宣祖實錄』 卷14, 宣祖13年 10月 16日 壬子 2번째 기사.

는데도 계후자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러나 계후자를 증자로 삼는다는 문구가 분명하지 않고 『大明律』에 있는 문구도 자세하지 않으니 다시 살펴도 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sup>40)</sup> 이는 결국 대신들과의 논의를 통해 계후하였을지라도 친자 가 태어나면 친자의 봉사를 정법으로 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sup>41)</sup> 선조대도 명종과 마 찬가지로 가계 계승에서 친자를 우선시 한 것이다.

반면 인조·현종대에는 계후자의 봉사를 정법으로 삼았다. 인조대의 논의는 崔鳴吉의 입후를 통해 알 수 있다. 최명길은 1625년(인조 3)에 동생의 둘째 아들 崔後亮을 입후 했는데<sup>42)</sup>, 後妻 허씨에게서 친자 崔後尙을 낳았다. 당시에는 입후를 행했어도 친자를 낳을 경우 친자가 가계를 계승하는 것이 정법이었다. 그러나 최명길은 부자관계가 정 해졌고, 천륜에도 순서가 있으니 계후자와 친자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계후자 최후량으로 가계를 계승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청했다.<sup>43)</sup> 인조는 최명길의 청을 들어주며 계후자를 장자로 삼는다는 수교를 내렸다. 인조의 수교는 金長生의 『疑 禮問解』의 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44)</sup> 인조는 최명길의 입후를 통해 명종·선조대하 는 달리 가계 계승에서 계후자를 우선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수교를 통해 계후자의 계승권을 인정해주었다.

현종대의 논의는 沈之源의 후계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다. 심지원은 계후자를 들었 으나 후에 친자를 낳자 친자를 장자로 삼으려 했다. 이에 대신들은 崔鳴吉이 계후자를 장자로 삼은 것을 근거로 하며 反正 뒤의 수교인 인조의 수교를 정법으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종은 계축년(1553)의 수교를 따를 것을 명했다.<sup>45)</sup> 1663년(현종 4) 正言 元萬里는 '인조의 수교는 金長生의 『疑禮問解』의 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大典』의 續錄이 간행된 이후 수교를 상고할 만한 정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조 의 하교는 병란을 겪는 동안 분실되었는데 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成憲을 살피는 의리에 혐의가 있습니다'라며 인조의 수교를 따를 것을 요청했다. 결국 현종은 인조대의 수교에 따라 계후자를 장자로 삼고 봉사를 맡길 것을 명했다.<sup>46)</sup> 이후

40) 『宣祖實錄』 卷15, 宣祖14年 2月 6日 更子 3번째 기사.

41) 『宣祖實錄』 卷17, 宣祖16年 4月 7日 戊午 “收議于正二品以上, 凡繼後人, 生親子, 則以親子奉祀事 爲定法”.

42) 『繼後謄錄』 卷2(p.34)에 최명길의 입후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명길의 계후 자는 崔福人이다. 하지만 족보를 살펴보면 최후량으로 되어 있다. 계후자의 실제 이름과 족보 상 의 이름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43) 『國朝人物考』 卷60, 崔鳴吉編.

44) 『疑禮問解』 卷1, p.29b, 註 “仁祖朝 完城君崔鳴吉 繼後後已生子 請從胡文定公古事以繼後子爲長子 允之事在先君子下世後而受教如此 故添附下條同”.

45) 『顯宗實錄』 卷6, 顯宗3年 9月 17日 丁亥 2번째 기사.

1669년(현종 10)에 계후자의 봉사권을 인정한다는 수교<sup>47)</sup>가 내려지면서 이후에는 친자가 태어나더라도 계후자가 가계계승을 하였다. 이로써 계후자는 자신의 봉사권과 가계계승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후의 기록인 『繼後謄錄』이나 『別繼後謄錄』을 살펴보면 『경국대전』의 입후조에 어긋나는 입후를 法外繼後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법외계후로 구분된 입후라 할지라도 법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입후로 인정될 수 있었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 진행된 입후이다. 1746년(영조 22)에 반포된 『續大典』에 의하면 동성 친족의 장자로 입후를 진행하거나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입후가 진행될 수 없었다.<sup>48)</sup> 하지만 1765년(영조 41)에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특별히 입후를 허락한다는 수교<sup>49)</sup>가 내려지면서 예외적으로 입후가 인정되었다. 이후 1785년(정조 9)에 반포된 『大典通編』에 “다른 한쪽 부모 및 門長이 상언할 경우 입후를 허락한다”<sup>50)</sup>는 규정이 추가되면서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 진행된 입후는 법외계후가 아닌 일반적인 입후로 인정되었다.

조선의 입후법은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비되었다. 세종대에 승중에 관한 문제로 시작된 논의는 입후제도의 성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여러 대에 걸친 논의를 통해 『경국대전』의 입후조로 정착했다. 『경국대전』의 입후조는 조선후기까지 입후의 기준이 되었지만 시대에 따라 변형되어 법전에 수록되었다. 입후법의 해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는 가계계승에 관한 일이었다. 계후자를 들인 후 친자가 태어날 경우, 가계의 계승을 누구에게 시킬 것인가가 문제시 되었다. 명종대와 선조대에는 친자를 우선시 했지만, 인조와 현종대에는 계후자를 우선시 했다. 또 현종은 수교를 통해 계후자의 가계 계승권을 안정시켰다. 이는 가계 계승에 있어서 계후자의 권위가 강해짐을 보여주는 변화였다. 현종의 결정은 부자간의 혈연을 우선시하던 관습에서 의리를 더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입후법의 해석의 문제와 더불어 법전의 변화도 생겼다. 영조대 전까지는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이후 진행된 입후는 법외계후로 구분되었으며, 『속대전』에도 규정되어

46) 『顯宗實錄』 卷6, 顯宗4年 4月 4日 辛丑 2번째 기사.

47) 『受教輯錄』 卷3, 禮典, 立後條 “既有繼後子, 而使已出主祀, 大有乖於禮制, 更爲定制釐正. 康熙己酉承傳”

48) 『續大典』 卷3, 禮典, 立後條 “以同宗之長子爲後者及一邊父母俱沒者, 竝勿聽”.

49) 『承政院日記』 英祖41年5月16日, “必曰情雖可矜, 一邊父母俱無, 事當勿施, 而乙酉五月十六日筵中, 此後此等人, 特許立後事有教, 依受教, 特爲立後之意, 回啓事, 捧承傳施行”.

50) 『大典通編』 卷3, 禮典, 立後條 “增, 情理可矜, 則或因一邊父母及門長上言, 本曹回啓, 許令立後”.

있다. 하지만 1765년(영조 41)에 한쪽 부모가 사망하였더라도 입후를 허락한다는 수교가 내려지고,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에 영조대의 수교가 수록되면서 이후에는 일반적인 입후로 인정되었다. 즉 입후에 변화가 생기자 이를 인정하고 법제적인 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 2. 『繼後臚錄』

### 1) 『繼後臚錄』의 편찬

입후법의 제정 이후 입후를 원하는 養家는 『경국대전』의 입후조 규정을 준수하여 예조에 입후를 요청했고 국왕의 윤허를 받아 예조를 통해 입후의 증빙문서인 繼後立案을 발급받았다. 이후 예조에서는 입후의 사실을 정리한 『繼後臚錄』을 만들어 후일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sup>51)</sup>

臚錄의 사전적 의미는 ‘베껴서 기록한다’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기록 사료들을 살펴보면 등록은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통용되었다.<sup>52)</sup> 국사편찬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은 ‘국가의 前例와 典故를 위해 편찬하며 후일의 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sup>53)</sup> 다시 말하면 등록은 각 관청에서 업무의 내용을 형식을 정해 후일에 있을 분란에 증빙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해 비치해 둔 문서인 것이다. 등록의 형식은 ①각 관청에서 작성한 官廳日誌의 형식, ②단위과제별 관련 공문서를 모은 형식, ③단일 사안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집 형식,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관청 일지류의 경우, 공무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된 공문서·국왕의 전교·관청의 상황 등이 編年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단일과제별로 관련 공문서를 모은 형식에는 受教臚錄류와 행정 업무상에서 발생한 업무를 기록한 등록이 있다. 마지막 보고서 및 자료집의 형식은 대표적으로 의계류가 해당된다.<sup>54)</sup> 이 분류법에 따르면 『繼後臚錄』은 단위과제별 공문서를 모은 형식에 해당한다. 즉, 『계후등록』은 행정업무 중 발생한 사안을 일정 형식에 따라 작성한 등록인 것이다. 등록을 만들어 보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입후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입후와 충돌하는 문제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계후등록』은 1618년(광해군 10)부터 1863년(철종 14)까지의 입후 기사를 수록한 것으로 현재 20책이 남아 있다. 등록에 수록된 입후의 총 건수는 12,486여건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51) 김혁, 「藏書閣 소장 臚錄의 문헌학적 특성」, 『장서각』 4권, 2000, p.16-17; 연갑수, 「朝鮮後期 臚錄에 대한 研究」, 『외대사학』 12권, 2000, p.195.

52) 연갑수, 「朝鮮後期 臚錄에 대한 研究」, 『외대사학』 12권, 2000, p.189.

53) 김인걸, 「各司臚錄 資料의 基礎調査 및 研究」,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연구지원보고서, 1998, p.4-8.

54) 이형중, 「조선시대 臚錄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p.9-14.

[표 1] 『繼後謄錄』

순번	권	수록 연도	대상 연수	입후 건수	연 평균
1	1권	1626~1636	10	441건	44건
2	2권	1618~1625	7	340건	49건
3	4권	1653~1659	7	582건	83건
4	5권	1660~1667	8	532건	67건
5	7권	1676~1679	4	533건	133건
6	10권	1664, 1666, 1668~1675, 1678, 1687~1689	14	321건	107건
7	13권	1696~1697	2	427건	214건
8	15권	1701~1703	3	376건	125건
9	17권	1708~1711	4	673건	168건
10	19권	1717~1719	3	312건	104건
11	23권	1724, 1731~1734	5	592건	118건
12	27권	1750~1754	5	563건	112건
13	30권	1773~1779	7	1,075건	154건
14	32권	1785, 1787~1793	8	908건	114건
15	33권	1794~1801	8	1,075건	134건
16	34권	1802~1810	9	886건	98건
17	35권	1811~1825	15	878건	59건
18	36권	1825~1839	15	837건	56건
19	37권	1840~1855	16	795건	50건
20	38권	1856~1863	8	340건	43건
총 건수				12,486건	

(고민정, 『『繼後謄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표 1]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sup>55)</sup> 계후등록의 권별 수록연도와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卷의 경우, 표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각 권에 수록된 연도는 연속되지 않으며, 책의 권수도 연속되지 않는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연도에 입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재정리해 적는 과정 중 생긴 오류이거나 기록을 한꺼번에 적으면서 누락된 기록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sup>56)</sup> 연평균 건수를 살펴보면 입후가 17세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18세기에 정점을 찍고 19세기부터 다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57)</sup> 이를 도표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더 자세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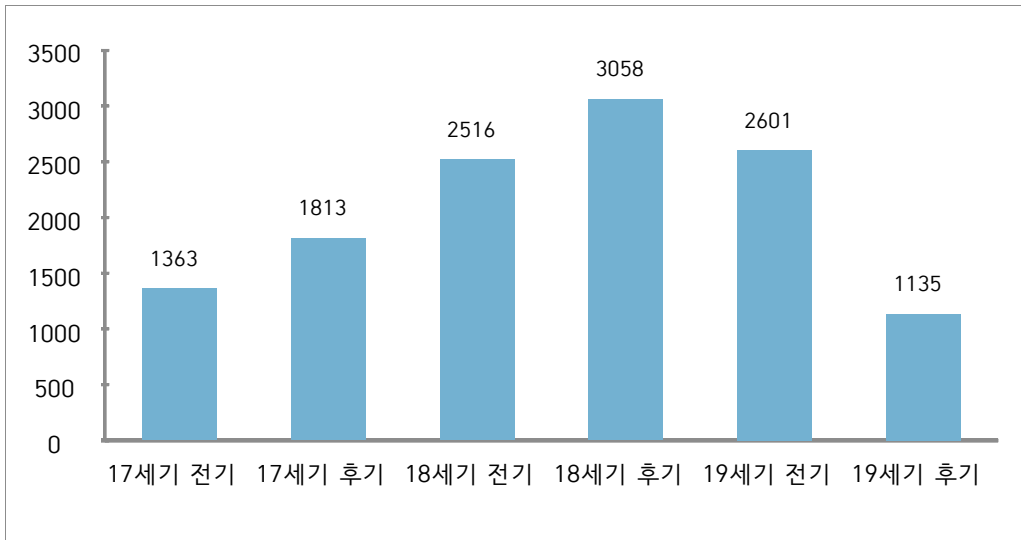
55)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1983, p.591-592; 고민정, 『『繼後謄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113권, 2014, p.230.

56) 김혁, 「藏書閣 소장 謄錄의 문헌학적 특성」, 『장서각』 4권, 장서각, 2000; 이형중, 「조선시대 謄錄 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알 수 있다.

[도표 1] 『繼後臚錄』으로 본 立後 건수



[도표 1]은 계후등록 20책에 기록된 입후 건수를 시기별로 나타낸 표이다. 등록에 기록된 연대가 책마다 다르고 누락된 연도와 기사들이 있어 정확한 입후의 건수를 알 수 있는 없지만 입후가 17세기를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였다가 18세기 후반부터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입후는 17세기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8세기 후반에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다.

『계후등록』은 1618년(광해군 10)부터 작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1618년 이전에도 등록이 작성되었음은 『明宗實錄』을 통해 알 수 있다. 명종 8년(1553)의 기사를 보면 사헌부가 남정국과 남해의 계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禮曹臚錄”을 언급한다. 계후자 남정국과 첩자 남해 간에 재산 분쟁이 생기자 남해는 남정국의 계후입안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헌부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조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본 것이다.<sup>58)</sup> 이를 통해 계후입안을 발급해 준 후 후일에 있을지도 모를 분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록에 내용을 작성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당

57) 10권은 1687년부터 1689년 총 3개년으로 연평균 산정의 기준을 삼았다.

58) 『明宗實錄』 卷15, 明宗8年 9月 11日 甲寅 2번째 기사, “憲府啓曰 … ‘南獬以我之繼後立案, 爲偽造, 而黜送設計’ 云. 臣等取禮曹臚錄及南獬上言, 而見之, 則臚錄內, 去戊申年, 尹氏上言, 歷舉夢得曾爲繼後身死之事”.

시에는 ‘계후등록’이라는 명칭 대신 ‘예조등록’이라는 명칭으로 통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까지는 업무에 따라 등록을 세분화하여 작성하지 않고 하나의 관청 등록에 같이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임란 직후인 17세기부터 파괴된 기존 문서를 다시 재건하면서, 관료 기구의 확장·행정의 세분화로 관청의 문서가 폭주하자 기록을 부문별로 나눠 작성하기 시작했다.<sup>59)</sup> 이러한 배경과 함께 입후가 증가하자 『계후등록』도 예조등록에서 분리되어 예조의 소속 관청인 稽制司를 통해 작성되었다.

다음으로 『계후등록』에 입후 기사들이 어떤 양식으로 기술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아래 기사는 卷2에 기록된 1618년(광해군 10) 5월 22일 曹應休의 입후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조응휴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이 죽어 그의 처 양씨가 입후를 진행하였다. 예조에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 입안을 발급한 후 이 사실을 등록에 기록했다.

一. 예조 계목. 故禮曹佐郎 曹應休의 처 楊氏가 남편이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이 죽어 동성 10촌 아우 漢賓의 둘째아들 峻極을 族 楊時冕·曹應禎·曹漢一과 함께 상의하여 계후함. 만력46년 5월 22일 동부승지 臣 鄭 담당. 아뢴대로 윤택한다.<sup>60)</sup>

위의 기사를 통해 기술 양식을 보면 입후 청원자·양부와 생부의 촌수·생부와 계후자 및 증인의 인적정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입안의 담당자와 임금의 재결을 기록하여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입후 청원자는 대체로 養父이며, 양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養母가 대신 청원했다. 양부와 생부의 촌수가 기록되는 이유는 둘의 관계가 동성 친족이며 같은 항렬임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는 입후조에서 계후자의 범위를 동성친족의 支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증인은 입후에서 보증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 양가와 생가 뿐 아니라 집안의 친척들과 상의를 통해 이뤄진 행위라는 것을 밝히는 역할인 것이다. 입후의 증인은 시기에 따라 범위와 대상이 달라진다. 초반의 계후등록에는 남편의 친족과 아내의 친족, 양쪽의 친족이 모두 증인으로 참여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남편 쪽의 친족만이 증인으로 참여했다.<sup>61)</sup> 이는 후기로

59) 김혁,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서지학보』 26권, 2002, p.102-103.

60) 『繼後謄錄』 卷2, p.1, 一, 曹啓目, 故禮曹佐郎曹應休妻楊氏 家翁嫡妾俱無子身死 同姓十寸弟漢賓 次子峻極 族楊時冕·曹應禎·曹漢一 同議繼後 萬曆四十六年五月二十二日 同副承旨臣鄭次知 啓依允.

61) 최재석, 『한국의 가족과 사회』, 경인문화사, 2009, p.113-114.

시기가 내려갈수록 부계 쪽으로 친족의식과 종법 의식이 강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欄外에 양부의 성명과 주요 내용을 기록해두어 색인을 편하게 했고, 18세기 후반부터는 養家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도 추가하였다.<sup>62)</sup>

## 2) 『繼後謄錄』卷1, 2의 내용상 특징

입후의 사실을 기록한 『계후등록』 20책 중 1책과 2책은 모두 1618년부터 기사가 작성되었으며 내용 또한 중첩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1책과 2책은 연속된 기록이 아니며 2책을 1책이라 정정하여 현존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1책은 별본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또한 1책은 전란으로 인해 소실된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63)</sup> 여기서 말하는 1책은 卷2를, 2책은 卷1을 의미한다. 하지만 권2를 별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권1의 卷首題를 살펴보면 “繼後謄錄第一”이라 적혀있으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무오년(1618) 6월에 등록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기록의 내용은 10월부터 시작되며, 이 기사들은 2권의 기사와 중첩되는 내용이다. 반면 권2의 卷首題는 “戊午年以後繼後謄錄 稽制司上”이라 적혀있으며 기록의 내용은 5월부터 시작된다. 두 권에 수록된 기사의 연도를 살펴보면 1618년부터 1620년까지의 기록 총 64건이 겹친다. 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표 2] 『繼後謄錄』 卷1·2의 기사

(단위 : 건)

연도	『繼後謄錄』 卷1	『繼後謄錄』 卷2	동일 기사
1618년	7	44	7
1619년	39	42	38
1620년	19	29	19
1621년	-	25	-
1622년	-	46	-
1623년	-	61	-

62) 고민정, 『『繼後謄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13권, 2014, p.205-208.

63)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研究-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p.38.

1624년	-	30	-
1625년	-	61	-
1626년	44	-	-
1627년	69	1	-
1628년	2	-	-
1629년	95	-	-
1630년	-	1	-
1631년	1	-	-
1632년	56	-	-
1633년	37	-	-
1634년	45	-	-
1635년	26	-	-
1636년	1	-	-
<b>총 계</b>	<b>441</b>	<b>340</b>	<b>64</b>

[표 2]를 보면 권1은 1626년(인조 4)부터의 기사를 시작으로 1636년(인조 14)까지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반면 권2는 1618년(광해군 10)부터의 기사를 시작으로 1625년(인조 3)까지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권1은 인조대의 기록이며, 권2는 광해군대의 입후 기록으로 두 권은 연속적인 기록인 것이다. 물론 권1의 경우, 1618년~20년까지의 기사가 적혀있지만 대부분의 기사가 권2의 내용과 동일하며 새로운 기사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권2를 별본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권1과 권2의 표제를 서로 바꿔 권1을 권2로, 권2를 권1로 정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두 권의 표제가 서로 바뀐 원인은 앞서 기술했듯이 임란 직후에 기록물들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세분화되고 문서가 늘어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등록의 작성 방식이 바로바로 기록하는 방식이 아닌 기사의 내용을 한꺼번에 적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적는 과정에서 중복된 기록들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두 권의 계후등록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국대전』 입후조에 근거하여 입후가 허락된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입후법에 어긋나 왕의 特恩으로 입후가 진행된 사례와 파계된 사례, 봉사와 관련된 사례도 수록해두었다. 기재양식은 계후입안의 내용 중 예조의 계목을 축약해 핵심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있다.<sup>64)</sup> 이 틀은

64)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研究-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P.30.

대부분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간혹 청원자의 소지나 상언의 내용을 자세하게 옮겨 적기도 했다.

그런데 두 권은 입후의 사유와 양부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25년(인조 3)까지의 기록인 권2는 입후의 사유를 『경국대전』 입후조의 내용인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라는 구절로 적고 있다. 반면 1626년(인조 4)부터의 기록인 권1은 입후의 사유를 ‘후사가 없어서’ 또는 ‘후사가 없이 죽어서’라고 적고 있다. 즉, 입후의 사유가 無子에서 無後로 바뀐 것으로 이는 계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연관된다. 1625년까지 계후자는 아들의 하나로만 대우를 받았다. 이는 친자와 계후자 간의 가계 계승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1626년부터 계후자는 아들의 하나가 아닌 가계의 계승자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입후의 사유도 자식이 아닌 후사가 없다는 점으로 변한 것이다.

『계후등록』 권2는 養家의 거주지를 양부의 이름 앞에 기재하고 있다. 반면 권1은 권2와 중첩되는 기사와 새로운 기사에 모두 양가의 거주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기사를 작성할 때 양가의 거주지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양가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1784년(정조8) 예조판서 嚴禱의 건의에 의해 18세기 후반부터 다시 추가되어 기록되었다.<sup>65)</sup> 엄숙은 계후문서가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입후 청원자의 거주지가 명시되지 않아 내용이 매우 소략함을 지적했다. 이에 관직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某部·某邑으로 거주지를 기록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정조의 윤허로 養父의 거주지가 추가되었다.<sup>66)</sup>

[표 3] 養父와 生父의 관계

	親兄弟	4寸	6寸	8寸	10寸	12寸 이상	기타	總計
光海君	89	42	18	24	9	1	4	187
仁祖	288	95	60	52	20	11	4	530
計	377	137	78	76	29	12	8	717

[표 3]은 입후의 건수를 양부와 생부의 관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65)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研究-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P.30.

66) 『日省錄』 正祖8年 2月 8日.

양부와 생부의 관계는 친형제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촌, 6촌, 8촌, 10촌, 12촌 이상 순이었다. 친형제관계가 가장 많은 이유는 兄亡弟及의 원칙 때문이었다. 17세기 초까지는 친아우의 아들이 아닌 먼 친척의 아들을 입후할 경우, 봉사조에 의거해 형망제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즉, 할아버지 이상을 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아우의 아들을 입후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승중조로 내려진 재산이 衆子인 아우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친형제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예에 해당하지 않았다.<sup>67)</sup> 이는 계후자를 동종의 지자로 규정했다라도 혈연적으로 가까운 동생의 아들을 입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 것이다.<sup>68)</sup> 또 동종지자의 개념이 친형제로부터 시작되고, 촌수 상으로도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이다. 친조카의 경우, 살아온 가정환경이나 성향을 파악하기 쉬워 우선시 되었다. 실제로 중종·명종·선조대에는 가까운 친족에서 입후한다는 법조문의 취지에 따라 먼 친족에게서 입후 한 자는 법적으로 아우의 아들, 사촌의 아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으며, 외손보다도 낮은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sup>69)</sup>

그러나 16세기부터 친형제에게 아들이 있더라도 4촌 또는 6촌 이상의 아들을 입후하는 경향이 생겼고 그 계후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키는 경우도 생겼다.<sup>70)</sup> 17세기 초반에도 이러한 경향의 영향으로 4-8촌의 아들로 입후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입후가 제사 승계의 주요 원칙으로 인식되면서 계후자에 대한 제한도 사라졌다.<sup>71)</sup> 따라서 계후자의 범위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친형제의 아들에서 동종 가까운 친척의 아들로 확대되었고<sup>72)</sup> 조선후기에는 20촌 정도로 촌수가 먼 사람의 아들을 후사로 삼기도 했다.

양부와 생부의 촌수가 멀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친형제에게 계후할 수 있는 아들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입후조에 동종지자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양부는 이 규정을 이용해 계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촌수보다는 계후자의 賢否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sup>73)</sup> 촌수가 먼

67) 김윤정, 「조선중기 제사승계와 兄亡弟及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권, 2002, p.117.

68) 『中宗實錄』 卷41, 中宗15年 12月 19日 癸卯 2번째 기사.

69) 박미혜, 「17세기 養子의 제사상속과 재산상속」, 『한국사회학』 33권, 1999, p.702.

70) 『中宗實錄』 卷62, 中宗23年 7月 3日 壬申 5번째 기사, “…國家自反正之後, 爲無罪而死者, 許以所願立之, 故其後因循, 至有棄其同生之子, 而以四寸之子爲後者. 故同生之子, 不得祀其祖, 而四寸之子, 乃得祀之…”

71) 김윤정, 「조선중기 제사승계와 兄亡弟及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권, 2002, p.124.

72) 『續大典』 禮典, 立後條, “凡嫡長子無後者, 以同宗近屬許令立後”.

73) 고민정, 「조선후기 입후절차에 관한 연구-生家 및 養家 부모의 사망문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17권, 2015, p.315.

사람의 아들로 입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계후자는 양부모 뿐 아니라 집안의 제사를 받들 수 있게 되었다.<sup>74)</sup> 제사에 대한 규정이 변하자 동종의 아들 중에서도 영리해 家格을 높일만한 자질이 있는 자를 골라 후사로 삼고자 한 풍조가 나타났다.<sup>75)</sup> 계후자를 통해 가문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양부와 생부간의 촌수는 더 멀어져 갔다.

다음으로 『계후등록』에 나타나는 친족 호칭에 대해 알아보겠다. 권2에서는 친족을 夫側과 妻側을 나누지 않고 모두 ‘族’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반면 권1에서는 夫側·妻側 양쪽을 뜻하는 兩邊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兩邊族親·兩邊門族·兩邊門長등의 호칭으로 지칭했으며, 간혹 妻同生娣·妻姪도 등장했다. 이는 입후의 동의자 범위에 부측과 처측의 친족이 모두 해당했다는 의미이다. 호칭 중 門長이라는 호칭은 조선 후기의 문장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에서 문장은 養父와 生父의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父系의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반면 17세기 초반의 문장은 부측과 처측 친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인물을 지칭하는 호칭이었다. 17세기 초의 문장은 동성친 뿐 아니라 이성친도 포함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입후의 행위에서 이성친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호칭이었다.

『계후등록』은 예조에서 입후의 사실을 기록해 후일의 참고자료로 만들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 등록은 17세기~19세기의 입후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 권의 등록 중 권1은 인조대의 기록이며, 권2는 광해군대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권1과 2는 서로 표제를 바꿔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권의 『계후등록』에 기록된 양부와 생부의 관계를 보면 친형제간이 가장 많았으며, 4촌·6촌·8촌 순이었다. 형망제급의 원칙과 혈연 상 가장 가까운 이의 아들을 입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친형제간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16세기부터 4촌 및 6촌의 아들로 입후해 봉사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를 통해 동생의 아들이 있더라도 다른 이의 아들을 입후해 봉사를 행한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친족에 대한 호칭을 통해 입후의 동의자로 동성친 뿐 아니라 이성친도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17세기 초까지는 입후의 행위에서 이성친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74)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1983, p.626.

75) 최연숙,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研究』,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4.



### Ⅲ. 17세기 초 立後 양상

#### 1. 立後 절차

##### 1) 立後 청원

###### (1) 일반 繼後

16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종법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강화되면서 부계 중심의 친족 결합도 이루어졌다.<sup>76)</sup> 종법의 수용과 더불어 입후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입후는 『경국대전』의 입후조 규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었다. 입후의 규정에 따르면 나라에 입후를 고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였으며, 입후 대상자는 동성 친족의 지자였다. 이때 입후를 청원하는 주체는 養父 또는 양부의 처였다. 즉, 입후는 양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생가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생가의 부모 또한 국가에 입후 증빙 문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표 4] 청원자에 따른 立後 건수

王代	養父	養父의 妻	養父의 妾	生父	祖父母	養父의 女	計
光海君	108	78	1	-	-	-	187
仁祖	277	248	-	2	2	1	530
計	385	326	1	2	1	1	717

[표 4]는 17세기 초에 이루어진 입후의 건수를 청원자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르면 광해군대와 인조대 모두 대부분 양부의 청원에 의해 입후가 진행되었다.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양부의 처를 통해 입후가 진행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입후가 입후법에 따라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입후는 일반계후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입후를 나라에 고하기 전에 양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입후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입후는 양부의 첩이나 생부, 다른 친족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생부와 친족의 청원에 의한 입후도 간혹 존재했다.

76) 김명자, 「16~17세기 河回 豊山柳氏家の 宗法 수용 과정」, 『대구사학』 96권, 2009, p.21.



하지만 養父나 養父의 처가 입후를 청원했다 해서 모든 입후가 일반계후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1619년에 진행된 尹德基의 입후는 양부의 처가 청원하고 있지만 예조에 의해 法外繼後로 구분되었다. 윤덕기의 처 이씨는 남편의 4촌 尹德隣의 셋째 아들 尹籓를 입후하고자 상언을 올렸다. 예조는 윤로의 생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며 법외의 일이라 주장하며 입후를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광해군이 윤덕기 처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입후가 진행되었다.<sup>77)</sup>

이 사례는 생부모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법외계후로 구분되었다. 즉, ‘양가와 생가의 아버지가 동의하여 나라에 고한다’<sup>78)</sup>는 입후법의 구절을 어겼기 때문에 법외로 구분된 것이다. 이처럼 입후법의 구절을 어긴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부의 처가 청원했다고 해도 예조에 의해 법외로 구분되었으며, 왕의 결정에 따라 입후가 진행되었다.

반면 양부의 첩에 의해 행해진 입후는 일반계후로 인정되었다. 1618년(광해군 10) 李欽의 첩 柳召史는 남편의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동생 李鏞의 아들 李長雄으로의 입후를 청원해 입안을 발급받았다.<sup>79)</sup> 이 입후는 이흠의 동성친 3명과 이성친 5명의 동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었다. 당시 행해진 보통의 입후들의 경우 입후의 동의자로는 2~3명이 참여한다. 반면 이흠의 입후에는 8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이는 입후가 이흠 부부의 사망 이후 첩의 청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입후의 대상자는 친족들의 회의를 통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흠의 입후는 첩을 통해 이뤄졌지만 양부나 양부의 처에 의한 청원과 마찬가지로 일반계후로 인정될 수 있었다. 입후법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 어머니가 관에 고한다고 적혀있다. 즉, 첩을 庶母로 보며 어머니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양부와 양부의 처가 모두 사망한 상태라 첩을 통해 입후가 진행된 것이다.

## (2) 법외 繼後

입후는 양부모가 청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생부 또는 다른 친족에 의해 청원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경우 입후는 예조에 의해 법외로 분류되었다. 청원자의 변화

77) 『繼後臚錄』 卷2, p.8, 一. 故幼學尹德基妻李氏上言據 曹啓目<sup>向</sup> 故尹德基妻李氏無後 家翁同姓四寸弟尹德隣 第三子籓 欲爲繼後爲<sup>白在果</sup> 籓父母俱沒 法外之事 不取容議 上言<sup>內辭緣</sup> 受理安徐何如 萬曆四十七年初五日 右副承旨臣鄭次知 啓依願施行爲<sup>良如教</sup>.

78) 『經國大典』 卷, 禮典, 立後條 “兩家父同命立之”.

79) 『繼後臚錄』 卷2, p.6, 一. 曹啓目 故縣監李欽妾柳召史 家翁嫡妾俱無子 同生弟李鏞 第二子長雄 族李鏞·李鏞·李鏞·宋繼業·宋繼顯·宋繼榮·金弘益·崔祚 同議繼後 萬曆四十六年十一月二十四日 同副承旨李次知 啓依允.

는 17세기 초부터 다양한 입후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계후등록』 권1·2에도 생부와 친족의 청원에 의한 입후가 존재한다. 그 중 생부의 청원은 모두 과거와 관련 되므로 후술하겠다.

17세기 초반에 행해진 입후에는 친족이 청원한 입후가 2건이 존재한다. 입후는 양부모가 청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양부모와 생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친족에 의해 입후가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입후의 청원은 생부모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생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양가 부모의 청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양쪽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친족들을 통해 입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경우들은 모두 입후를 함께 고할 부모가 없다는 점에서 모두 입후법의 규정을 어긴 입후였다. 따라서 소지를 통해 요청한 일반계후와는 달리 單子, 上言, 擊錚原情 등을 통해 입후를 요청했다.<sup>80)</sup>

故 部將 李季豪의 嫡女 이씨와 孽女 상궁이씨의 單子を 보면 “아버지 이 계호에게 아들이 없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단지 딸만 있습니다. 부모님 이상의 제사를 장차 의탁할 곳이 없을까봐 동성 6촌 李光胤의 둘째 아들 三俊을 입후하기로 遠近親이 동의하여 문서를 올립니다...”<sup>81)</sup>

刑曹判書 權盼의 單子を 보면 “...權倜부부와 아들이 모두 죽어 저의 부모와 조부모를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자 故 權倜의 둘째아들 蹟을 권척의 뒤로 계후하여...”<sup>82)</sup>

80) 박경,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장서각 소장 『繼後謄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25권, 2011;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研究-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81) 『繼後謄錄』 卷2, p.33, 一. 曹啓目 故部將李季豪嫡女李氏·孽女尙宮李氏單子內 父季豪無男子 而父母俱歿 只有女 矣身父母以上親之祭祀 將無所依 同姓六寸李光胤 第二子三俊 當爲立後 遠近族類同議呈狀 上項三俊乙 依他入啓妻 單子是白有亦 向前李氏兄弟亦 閱其祖先之絕祀 欲以同姓六寸親光胤 第二子三俊俾嗣 先祖之奉祭祀 其情可矜 似當依尹媿女子李尙毅妻尹氏等呈狀 例依願立後是白在果 目下不敢擅便 上裁施行何如 天啓五年四月初五日 左副承旨臣李次知 啓依願施行爲良如教.

82) 『繼後謄錄』 卷1, p.45-46, 一. 曹啓目 節呈刑曹判書權盼單子內 矣亡兄 故學生權峻 以高祖以下承重奉祀之人 無子息身死 以第二子故佐郎權倜繼後爲有如乎 同權倜亦 十餘年前 夫妻俱歿 只有一子 躋又於去丁卯年分 不幸身故 矣父母祖父母奉祀無人 以矣長子 故正字權倜 第二子蹟繼後 權倜之後 此固禮法情理之所當然 而常時無後之人 呈該掌請以某之某爲後 則緘問所生父母然後立案成給 乃是格例也 唯只矣家段遭權變故 兩子夫妻俱已身歿 呈狀無人緘問 無所嗣續 將絕祭祀無託 不得已矣身具由呈狀爲去乎 右良辭緣相考 以矣長子權倜 第二子權蹟爲次子權倜繼後子事乙 依法入啓施行立案成給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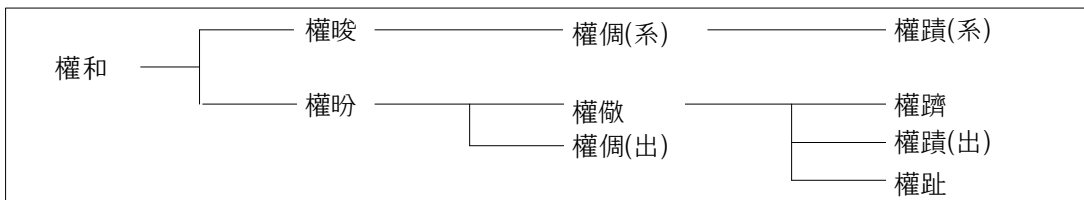
위의 사례들은 양부의 딸과 조부의 요청에 의해 입후가 진행된 것이다. 입후의 청원자가 친족이었기 때문에 단자를 통해 청원되었다. 첫 번째 사례는 1625년(인조 3)에 이계호의 두 딸이 입후를 청원한 것이다. 養父母가 모두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養父의 딸들이 입후를 요청하였다. 이계호의 딸들은 부모에게 자식이 딸밖에 없다며 동성 6촌 이광운의 둘째 아들 이삼준을 입후하기 위해 단자를 올렸다. 이들은 입후를 요청하기 위해 부모 이상의 제사를 의탁할 곳이 없다는 점과 遠親·近親이 모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예조는 이전에도 딸의 청원에 의해 입후가 진행된 일이 있는 점과 조상의 절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근거로 입후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인조의 허락에 따라 입후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1629년(인조 7) 권척의 입후이다. 이 사례는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계후자의 조부인 권분에 의해 입후가 요청되었다. 우선, 養父인 권척은 큰 아버지인 權峻에게 입후되어 가문의 봉사를 해야 하는 인물이었다.<sup>83)</sup> 그런데 권척 부부와 그의 아들이 모두 죽어 가문의 봉사자가 없자 권분은 자신의 첫째 아들 권경의 둘째 아들을 권척에게 입후시켜 가문의 봉사를 받들게 하고자 단자를 올렸다. 그는 養家에서 입후를 청원하면 生家에 緘問을 통해 입안이 성급되는 것이 격례이지만 두 아들 부부가 모두 죽어 부득이하게 연유를 갖춰 본인이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예조는 한 가문의 봉사를 위한 일이고, 조부의 요청에 의한 일이며, 선조대의 고사가 있으니 입후를 허락해 달라는 계목을 올렸다. 이 사례 또한 인조의 허가에 의해 입후가 진행되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양부모의 청원이 아닌 친족의 청원에 의해 입후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입후법에 어긋나며 예조에 의해 법외계후로 구분되었으나 결국 왕의 허락을 통해 입후되어 일반계후와 마찬가지로의 효력을 지녔다.

單子是白有亦 取考大典立後條 兩家父同命立之 父歿則母告官云 其所以重立後之義 而防制法外之意 亦寓於其間 今此權倜 以承重奉祀之人 夫妻俱歿 一子隨死 權盼以其祖先祭祀無托 欲以長子權倜 第二子蹟 立爲權倜之後 而權倜夫妻亦爲俱歿 此雖有違於規例 而最只以兩家父母之父 爲其先世奉祀 以其子之子 爲其子之後 參以情法 未爲不可 遂不驗 上年分 因吳百齡疏辭回啓 援引宣祖朝故事 特許依願立後是白在果 係干恩典上裁施行何如 崇禎二年五月十八日 同副承旨臣洪次知 啓依願施行爲良如教

83) 다음은 권척 집안의 대략적인 가계도이다(安東權氏家 『萬家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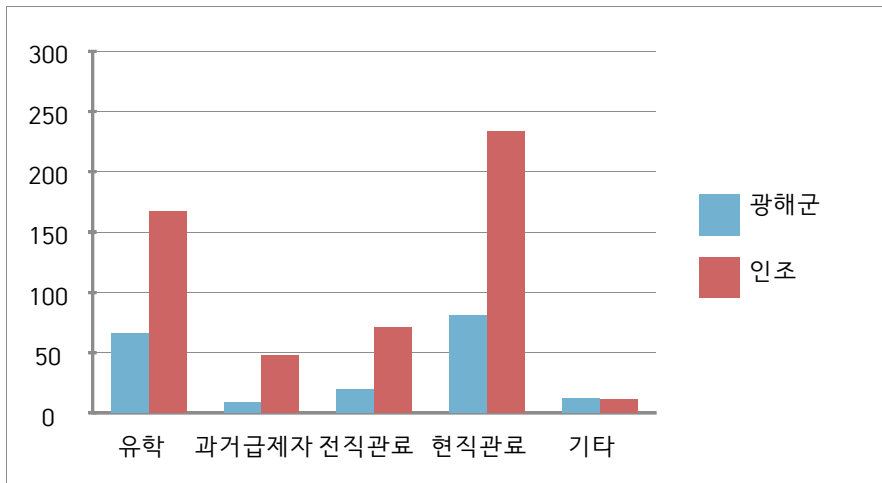


그런데 이 사례들에서 예조는 앞서 살펴본 윤덕기의 입후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덕기의 입후에서 예조는 법에 어긋난다며 입후를 반대했다. 반면, 두 사례에서는 모두 청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법외로 구분한 입후에서 예조가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가문의 절사가 있다. 이계호와 권척의 입후에서 청원자들은 부모의 절사와 집안의 절사를 근거로 입후를 요청하고 있다. 즉, 청원자들이 가문의 절사를 근거로 입후를 청원하면 예조도 입후의 허락을 요청하는 계목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왕이 내림으로써 모두 일반계후로 인정되었다.

### (3) 청원자의 職域

이상에서 일반계후와 법외계후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청원자의 직역에 따른 입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도표는 청원자의 직역에 따른 입후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 2] 청원자 職域과 立後



『계후등록』에 수록된 청원자의 직역은 유학, 과거급제자, 전직관료, 현직관료, 기타, 총 5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sup>84)</sup> 입후의 추세를 보면 기타를 제외한 모든 직역에서 광해

84) 유학의 경우 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는 청원자의 직역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양부의 처가 청원한 경우 양부의 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군대보다 인조대에 입후가 증가하고 있다. 두 시기 모두 입후를 주도한 층은 현직관료들이었다. 18세기 이후 입후를 유학이 주도한 것에 비해 17세기 초반에 입후를 주도한 층은 현직 관료였던 것이다.<sup>85)</sup> 이는 현직관료층이 다른 직역층보다 입후를 청원하기 더 편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기 입후를 청원한 인물을 살펴보면 忠節者, 왕실 종친 및 반정 공신도 존재한다. 이들의 입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忠節者·宗親·功臣의 立後

연번	연도	養父		청원자	立後子	生父	분류	비고
		직역	이름					
1	1618	幼學	李友杜	養父의 처	李承後	李堉	왜란 의병	1592년 사망
2	1619	縣監	李禮壽	養父의 처	李應斗	李信壽		진주 전투 사망
3	1619	幼學	尹東喆	養父의 처	尹邦老	尹益慶		정유재란 사망
4	1619	同知	李忠立	養父의 처	李時茂	李景立		전공 多
5	1620	生員	金應遠	養父	金天吉	金應蚪		정유재란 의병
6	1622	幼學	都聖俞	養父	都愼興	都汝雨		임진왜란 의병
7	1626	察訪	盧景佖	養父의 처	盧世孝	盧景倫		임진왜란 의병, 1595년 사망
8	1620	西昌守	李墉	養父의 처	李秀立	李燾	왕실 종친	
9	1622	積善君	李得仁	養父	李惟馨	李安仁		
10	1627	康津副正	李琮	養父의 처	李元麒	李琥		
11	1632	德津守	李淵	養父	李魯	李應順		
12	1632	茂林守	李善胤	養父의 처	李後憲	李址胤		
13	1634	晉陵君	李泰慶	養父의 처	李長漢	李順慶		
14	1627	原從功臣	金明遠	養父의 처	金得忠	金禮壽	반정 공신	

우선 왜란 당시 활동했던 인물들의 입후 사례는 7건이 있다. 이 경우의 사례 중 최

85)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현실』 73권, 2009, p.216-217.

초로 등장하는 것은 1618년(광해 10) 이우두의 입후이다. 이우두의 처 류씨는 남편이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이 죽자 남편의 8촌인 이육의 둘째 아들 이승후로 입후를 진행했다.<sup>86)</sup> 이우두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 김해성 전투에서 사망한李大亨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김해성에 갔다가 적에게 해를 당했다.<sup>87)</sup>

두 번째 이예수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한 인물이다. 그는 선조 때 刑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충신으로 旌閭되었다.<sup>88)</sup> 4번에 기록된 이충립의 경우, 생몰년은 확실치 않지만 임진왜란 당시 권율의 휘하에서 전공이 가장 많았던 인물로 2등 공훈에 기록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인물이 왜란 당시 많은 활약을 했다.

윤동철의 입후를 살펴보면 처 위씨가 남편의 10촌인 윤익경의 셋째 아들 윤방노로 입후를 진행했다고 적고 있다.<sup>89)</sup> 하지만 해남윤씨 가문의 족보에 적힌 내용을 보면 윤익경의 셋째 아들은 ‘邦壽’라고 적혀있으며, 출계하여 동철의 후사가 되었다고 한다.<sup>90)</sup> 즉, 계후자의 『계후등록』과 족보 상 이름이 다른 것이다. 이는 실제 이름과 족보상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왕실 종친의 입후를 살펴보겠다. 이는 왕실 친인척의 입후 사례로 모두 6건이 있다. 수록된 인물들 중 李墉·李得仁·李琮·李淵·李善胤은 모두 성종의 5세손으로 인조와 10촌 관계이고, 李泰慶은 인조와 6촌 관계이다. 국왕의 친족을 9촌까지 근친의 범위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모두 인조와 가까운 친척이다.

종친의 사례 중 1622년(광해 14) 積善君 李得仁의 입후를 보면 동생 李安仁의 둘째 아들을 입후했다고 적혀있다.<sup>91)</sup> 그런데 이득인은 李諒의 아들이지만 3촌인 李諤에게 입후된 인물이다. 따라서 이득인과 이안인은 본래는 친형제간이지만 4촌지간이 되었다. 하지만 동생의 아들을 입후한다고 명시한 것을 보면 입후를 고할 때 생부와의 혈연 관계는 입후 이전의 촌수를 기준으로 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반정 공신의 입후 사례는 1627년(인조 5) 金明遠의 입후이다. 김명원은

86) 『繼後謄錄』 卷2 p.2. 一曹啓目 金海故幼學李友杜妻柳氏 家翁嫡妾俱無子 同姓八寸親李墉 次子承後族李思杜李而栢同議繼後 萬曆四十八年六月十五日 左副承旨臣李次知 啓依允.

87) 『朝鮮寶輿勝覽』.

88) 『富平府邑誌』, p.7.

89) 『繼後謄錄』 卷2, p.8. 一曹啓目 康津故幼學尹東喆妻魏氏 家翁嫡妾俱無子 同姓十寸尹益慶 第三子邦老 族尹東赫尹致敬 同議繼後 萬曆四十七年七月初二日 同副承旨臣趙次知 啓依允.

90) 『海南尹氏大同譜』 卷1, p47.

91) 『繼後謄錄』 權2, p.21. 一曹啓目 積善君得仁 嫡妾俱無子 同生弟安仁 第二子惟馨 族高善副正仁安·景深同議繼後 天啓二年十二月二十七日 行左承旨臣俞次知 啓依允.



인조반정 당시의 공을 인정받아 原從功臣에 임명된 사람으로 그의 처 조씨가 收養하고 있던 아들을 계후자로 삼기 위해 입후를 요청했다. 수양이란 타인의 자녀를 3세 이전에 거두어 자기 자식과 같이 키운 것이다.<sup>92)</sup> 기사를 살펴보면 김명원은 생전에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 동생 金禮壽의 둘째 아들인 得忠을 3세 이전에 데려와 양육했다. 이후 김득충을 입후하고자 하니 친족들이 모두 동의했다. 김득충도 김명원이 자신을 3세 이전부터 키웠다고 밝혔다. 입안의 내용에도 수양을 했음이 확실하니 參議와 假郎廳인 梁時獻이 성첩하여 계를 올렸고, 왕이 이를 윤허하여 입후가 진행되었다.<sup>93)</sup> 김득충은 이미 수양입안을 통해 김명원의 수양자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명원의 처가 입후를 청원한 것은 김득충을 수양자가 아닌 아들로 입후해 그에게 가계의 계승을 맡기기 위해서였다. 입후가 증가하면서 수양자나 시양자로 삼은 이가 父側 동성 친족이며 소목에 합당하면 계후입안을 발급받아 계후자로 인정했다. 이는 수양자를 계후자로 삼아 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sup>94)</sup>

## 2) 繼後子

앞서 기술했던 것처럼 입후법에서 규정하는 계후자는 동성 친족의 지자였다. 장자와 독자에게는 가계의 계승이라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 계후자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장자와는 달리 가계 계승 임무가 없던 둘째 아들 이하 아들이 계후자로 선택되었다.

[표 6] 繼後子の 次序

次序	2子	3子	4子	5子	6子	7子	妾子	獨子
건수	546	113	36	6	2	1	6	1

[표 6]은 계후자의 次序에 따른 입후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 계

92) 『經國大典註解』前集, 刑典 “取他人子養以爲子曰侍養, 三歲前收而養之, 卽同己子, 曰收養.”

93) 『繼後謄錄』卷2, p.38, 一. 曹啓目 靖社原從功臣金明遠妻趙氏 家翁嫡妾俱無子 家翁生時 同生弟禮壽 次子得忠 三歲前率養 欲爲繼後 族趙春盤·金彦男同議 楊州官金得忠身 金明遠亦 三歲前收養 立案內段置 得忠收養의 實事 立案及族親條目兩家所志□ 向前金得忠 金明遠繼後 天啓七年八月二十四日 參議金 假郎廳梁時獻成帖入啓 天啓七年八月二十五日左承旨臣□□次知 啓依允.

94) 박경, 『조선 전기 收養·侍養의 실태와 立後法の 정착』,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p.148-149

후자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아들은 2子였다. 이는 가계 계승을 하지 않아도 되는 2子를 계후자로 많이 보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3子가 2子의 뒤를 이어 많은 선택을 받은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 우선, 아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을 다른 이의 계후자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2子가 이미 다른 이의 계후자가 된 경우, 차선책으로 3子가 계후자로 보내졌다. 또 다른 이유는 장자의 사망으로 인해 2子가 가계계승자가 된 경우이다. 이럴 경우 2子를 계후자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3子가 계후자로 보내졌다. 이를 통해 17세기 초반에 행해진 입후는 입후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입후법을 어기며 타인의 장자나 독자를 입후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예조에 의해 입후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입후가 허락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계후등록』에 수록된 독자는 입후가 성립된 사례이다. 또한 타인의 첩자를 입후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표 7] 妾子와 獨子를 立後한 사례

연번	연도	養父	칭원자	立後子	生父	養父-生父 관계	立後
1	1622	李起邦	養父의 妻	李汝森	李覺	8촌	첩자 입후
2	1625	黃可中	養父	黃澳	黃敬中	6촌	
3	1625	南宮迪	養父의 妻	南煜	南梔	4촌	
4	1627	金是	養父	金變	金時讓	8촌	
5	1627	張暉	養父의 妻	張弼漢	張昕	2촌(이복형제)	
6	1629	尹時省	養父	尹瑚	尹時忱	2촌(이복형제)	
7	1622	李玢	養父의 妻	李惟淸	李琬	2촌(친형제)	독자 입후

[표 7]은 첩자와 독자로 입후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면 첩자로 입후한 사례가 6건이나 된다. 17세기 초까지 첩자는 庶人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그들이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일도 당연한 일이었다. 『疑禮問解』에 따르면 金長生은 ‘서얼이 선조에 대한 제사를 받들지 못할 의리는 없다’는 程子說을 근거로 서인이 4대 봉사를 하는 것처럼 신분적인 한계로 첩자의 제사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95)</sup>

첩자를 입후하면 첩자 승적과 마찬가지로 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첩자라는 인

95) 『疑禮問解』, 「通禮」, p.27b “程子曰 雖三廟一廟 以至祭寢 亦必及於高祖 又曰 雖庶人必祭及高祖 今世之遵行此禮者 不爲無據”.



식은 바뀌지 않았다. 또 1415년(태종 15)에 종친과 각 품관의 첩자가 현관에 임용되는 것이 금지되고 『경국대전』에 반영되면서 첩자의 자손은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고, 올라 갈 수 있는 품계 또한 한정되게 된다.<sup>96)</sup> 따라서 첩자로 입후 할 경우에는 가문의 격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첩자로 입후한 사례를 보면 5건은 모두 계후자의 생부를 嫡兄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곧 養父의 신분 또한 妾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첩자 집안에서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 적자 집안의 첩자로 입후를 진행한 것이다. 나머지 1건은 ‘嫡’이라는 용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적자 집안에서 다른 이의 첩자를 입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자 집안의 입후라도 첩자를 들일 경우에는 족보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자를 입후한 사례는 1622년(광해 14) 이성의 입후이다. 이성의 처 이씨는 상언을 올려 남편의 동생 이완의 독자 이유청을 후사로 삼아 선대의 제사를 받들고자 했다. 예조는 타인의 장자로 계후가 성립이 되면 특은과 관련된다고 주장했고, 왕의 허락으로 입후가 성립되었다.<sup>97)</sup>

독자의 입후는 선조대에도 존재했었다. 『承政院日記』 인조대의 기사를 보면 1638년 朴明搏가 동생의 독자 朴爾點로 입후하기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선조대의 전례를 언급하고 있다. 원문이 결락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생의 독자 一皓로 입후하기를 요청하자 선조가 특명으로 허락하였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박명부의 요청도 선조대의 전례를 근거로 허락될 수 있었다.<sup>98)</sup>

타인의 장자를 입후하는 경우보다 독자를 입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후하는 일도 있었다. 예조에서 독자의 입후를 막은 이유는 독자를 출계시킬 경우, 생가는 絶祀하여 친아들이 있음에도 봉사자를 얻거나 班祔해야 했기 때문이다.<sup>99)</sup> 생가의 절사를 막기 위해 파계를 시키는 경우와 반대로 생가를 절사시키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계후자가 독자임에도 입후가 허락될 수 있었던 것은 선조대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입후를 요청하는 자가 선대의 제사를 모시는 봉사자였기 때문이었다. 입후법에 따르면 입후가 성립될 수 없지만 奉祀, 孝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특명

96) 『經國大典』 卷3, 禮典, 諸科條：再嫁失行婦女之子孫及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

97) 『繼後臚錄』 卷2, p.20, 一. 曹啓日 故忠義衛李城妻李氏上言 家翁嫡妾俱無子身死 家翁同生弟李琬獨子惟清 爲家之後 以奉先世之祀事 據曹回啓 取人長子 而繼後已成 近例而事 係特恩 自下不敢擅便 上裁施行 天啓二年十二月十三日 行左承旨臣俞次知 啓依願施行爲良如教.

98) 『承政院日記』 仁祖16年9月3日 壬戌.

99)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研究-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p.111-112.

으로 허락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독자로 입후할 경우, 독자의 생부는 班祔하여 사당에서 함께 모셔졌다. 독자의 청원자들은 공신이거나 名臣 가문, 봉사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인물이었으며, 2대 이상의 선조 봉사를 인정받으면 독자를 입후할 수 있었다.<sup>100)</sup> 또 일반적인 계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후의 청원은 上言을 통해 이뤄졌다. 생부가 독자를 계후자로 보낸 이유는 독자를 통해 봉사 받는 인물이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였기 때문이었다. 즉, 집안의 봉사를 위해 독자를 계후자로 보낸 것이다.

입후는 양부 또는 양부의 처에 의해 청원되었다. 이는 입후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예조에 의해 일반계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입후를 나라에 고하기 전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생부나 다른 친족들에 의해 청원되었다. 이러한 경우의 입후를 예조는 법외로 분류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17세기 초반 입후를 행하는 층은 대부분 현직관료들이었다. 현직관료들은 다른 신분들에 비해 입후를 청원하기 편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후의 대상으로는 동성 친족의 2子和 3子が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들은 장자에 비해 가계 계승의 임무가 없었기 때문에 계후자로 많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당시 행해진 입후의 대상자에는 동성 친족의 첩자와 독자도 존재했다. 독자는 입후법에 따르면 다른 이의 계후자가 될 수 없으나 청원자가 봉사자일 경우 허락되기도 했다.

이처럼 17세기 초반에 행해진 입후의 청원자와 대상자는 대부분 법전에 부합한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생부나 친족의 청원에 의해 입후가 진행되기도 했고, 독자를 입후하기도 하는 등 입후에 변화도 생겨났다.

---

100)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研究-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p.115.

## 2. 立後와 罷繼

입후를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가계의 계승이며, 가계 계승은 奉祀와 연관된다. 즉, 입후는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를 얻기 위함인 것이다. 종묘에서 제사의 단절이 왕조의 단절을 의미한 것처럼 가문에서 제사의 단절은 가계의 단절을 의미했다.<sup>101)</sup> 『계후등록』에 수록된 봉사와 관련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 奉祀와 관련된 사례

연번	연도	養父	청원자	立後子	生父	立後目的
1	1619	李自強	미상	李震榮	李汝強	생가 봉사
2	1619	李大淵	미상	李好善	李龍禧	
3	1620	魚夢禹	生父의 女	魚繼宗	미상	
4	1634	宋珪	生父	宋德立	宋以琦	
5	1635	金暘秀	生父	金壁	金英秀	
6	1618	辛膺	미상	辛有後	미상	양가 봉사
7	1634	×	祖母	×	鄭菊生	첩자 봉사

표를 보면 봉사와 관련된 사례는 생가의 봉사, 양가의 봉사, 첩자의 봉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생가의 봉사는 罷繼와 연관되며, 양가의 봉사는 봉사자 선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사례들을 첫째 생가의 봉사, 둘째 양가의 봉사자 선정, 셋째 첩자의 봉사로 나눠 살펴보겠다.

### 1) 生家の 奉祀

養家の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 행했던 입후와 반대로 罷繼는 生家の 絶祀를 막기 위해 행해졌다. 과거는 계후자를 本生家로 돌려보낸다고 하여 罷繼歸宗이라고도 불렀다. 생가를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과거를 청원하는 인물은 대체로 계후자의 생부였으며, 생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생가의 친족이 청원하였다.

생가의 절사를 막기 위한 과거가 처음 행해진 것은 성종대의 姜希孟 과거였다. 강희

101) 정공식, 「조선전기 朱子家禮의 수용과 祭祀繼承 관념」, 『역사민속학』 12권, 2001.

맹은 작은 아버지인 강순덕의 계후자였고, 강희맹의 아들 강학손은 큰형 강희안의 계후자였다. 즉, 강학손은 강희안의 뒤를 이어 本宗의 제사를 계승할 인물이었다. 그런데 강희맹의 생부와 양부가 모두 죽고, 큰형인 강희안까지 죽자 강희맹은 본인의 입후를 파기하고 본종으로 돌아가 자신이 본종의 제사를 받들고자 했다. 이 일은 『경국대전』의 반포 이후 생긴 일이었지만 『대전』에 파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논의의 사안이 되었다. 이 일은 여러 번의 논의를 걸쳐 본종이 絶後하면 동생이 본종으로 파계귀종하여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이 났다. 따라서 강희맹은 파계하여 본종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sup>102)</sup>

중종대의 법외계후 시행과 더불어 파계에 대한 요청이 계속 늘어나자 결국 명종대에 파계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다. 파계에 있어서 처음 제정된 법은 ‘입후를 한 후 친자가 태어날 경우 파계를 허락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1553년(명종 8) 長興庫令 李堉 집안의 파계 논의로<sup>103)</sup> “후사를 세운 후, 다시 친자를 낳으면 친자가 당연히 제사를 받들고, 계후자는 衆子로 논하며, 어지러이 파계해서는 안 된다”는 수교가 내려졌다.<sup>104)</sup> 이후 1554년(명종 9)에는 계후자의 친부모의 제사가 끊기면 본가로 돌아가 친부모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고 양부모는 다른 계후자를 들이도록 한 법이 제정되었다.<sup>105)</sup> 이 법은 친부모의 제사가 끊길 경우 양부모보다 친부모의 제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sup>106)</sup>

파계의 사례 중 1619년 행해진 파계는 사유를 적지 않고 爻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따라서 임술년에 파계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반면 나머지 파계의 사례는 파계 청원의 내용과 결과를 축약하여 기록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그 중 어계종과 김벽의 파계는 생가의 絶祀를 사유로 들며 파계를 청했다. 우선, 어계종의 파계는 여동생에 의해 청원되었다. 魚氏가 자신의 집안에 봉사를 할 사람이 없자 둘째 오빠의 파계를 청원한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생부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 어씨의 부모에게는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생전에 둘째 아들인 魚繼宗을 8촌 관계에 있는 친족 魚夢禹의 계후자로 주었다. 그런데 어씨의 부모가 죽고 첫째인 魚得深도 후사가 없이 죽

102) 강재훈, 「조선초기 家系繼承 논의를 통해 본 姜希孟家の 정치적 성장」, 『조선시대사학보』 42권, p.36-40.

103) 『明宗實錄』 卷14, 明宗8年 4月 17日 壬辰 1번째 기사.

104) 『受教輯錄』 卷3, 禮典, “立嗣之後, 却生親子, 則親子當奉祭祀, 而繼後子, 論以衆子, 毋得紛紜罷繼. 嘉靖癸丑承傳”.

105) 『受教輯錄』 卷3, 禮典, “爲人後者本生父母絶祀 則依法歸宗 許立後家改立. 嘉靖甲寅承傳”.

106) 박경,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장서각 소장 『繼後騰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25권, 2011, p.84.

자 어찌는 생가가 절사를 당할 처지라며 둘째 오빠인 어계종을 본가로 돌려보내 생가를 봉사하게 해달라고 청원했다.<sup>107)</sup>

김벽의 파계는 생부인 김영수에 의해 청원되었다. 김영수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둘째 아들인 金壁을 형인 金暘秀의 계후자로 보냈다. 그러나 장자인 金斗가 경오년에 죽고 자신을 봉사할 사람이 없자 둘째 아들 김벽의 파계를 요청했다. 김영수는 안동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동부사가 김영수와 그의 동생, 일가에게 소지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 했다. 예조에서는 김영수가 올린 소지 내용과 안동부사 조사한 사실을 적어 계문하였고 왕은 파계를 허락하였다.<sup>108)</sup>

친부모의 후사가 끊긴 경우처럼 법으로 규정된 사안일 경우 양가의 부모가 합의한 후 파계를 청원하는 것이 관례였고, 파계 논의를 주도하는 쪽은 대체로 생각였다.<sup>109)</sup>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파계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조에 파계 청원 소지를 올려야 했다. 예조에서 이 소지를 바탕으로 1554년(명종 9)의 수교를 적용시켜 왕에게 계문하면 왕이 이를 윤택해주는 형태를 따랐다.<sup>110)</sup> 이 두 사례는 모두 수교의 내용과 부합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파계가 허락된 것이다.

1634년(인조 12) 宋以琦의 파계는 兩家가 합의하지 않은 입후였다. 송이기는 자신과 상의 없이 8촌인 송규가 자신의 둘째 아들 宋德立을 입후했다며, 파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신에게 자식은 송덕립만이 남아 있으며 생부의 서명을 거짓으로 한 법전을 어긴 입후라 주장했다. 이에 예조에서는 송규가 발급 받은 계후입안을 거둬 交周하고 거짓으로 서명한 죄를 물을 것을 요청했다. 인조의 허락으로 파계가 결정되었다.<sup>111)</sup>

107) 『繼後臚錄』 卷2, p.12, 一 曹啓目 故學生裴秀義妻魚氏所志 次甥繼宗 九寸叔魚夢禹繼後以歸養爲 自有如可 長甥得深無後身死 女矣父母已爲無主孤魂 人情天理極爲悶迫 次甥繼宗 依法歸宗何如 萬曆 四十八年八月二十三日 右承旨臣金次知 啓依允.

108) 『繼後臚錄』 卷1, p.90-91, 一 曹啓目 幼學金英秀所志內 矣身以本宗承重之人 只有二子爲有如何 次子壁段 兄暘秀處養子以許給爲有如何乎 長子斗亦 庚午年分身死 奉祀無人 次子壁乙 依法典罷繼歸宗 妻 所志據行移推閱 則慶尙監司關粘連安東府使牒呈內 筋該 金英秀招內 矣身以本宗承重傳受之人 只有二子爲有如何 次子壁段 兄暘秀處養子以許給爲有如何乎 長子斗亦 庚午年分身死 奉祀無人 次子壁乙 依法罷繼歸宗爲良結呈狀的實 金暘秀 同生弟金弘秀 族親金得珰·金光洞·權克利等招內 金暘秀 嫡妾 俱無子女 其同生弟金英秀 次子壁乙 己未年分呈禮曹 依法繼後爲有如何乎 金英秀 長子斗亦 庚午年分身死 英秀大宗以奉祀無人 其子壁乙 罷繼歸宗爲良結 呈狀的實是如爲自有置 向前金壁乙 依法例歸宗 何如 崇禎八年九月十六日 右副承旨臣申次知 啓依允.

109) 박경,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장서각 소장 『繼後臚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25권, 2011, p.88.

110) 박경,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장서각 소장 『繼後臚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25권, 2011, p.89.

111) 『繼後臚錄』 卷1, p.82-83, 一 曹啓目 節到付慶尙監司關 粘連尙州兼任咸昌縣監牒呈內 州居宋以琦 所志內 憫迫情由段 京畿果川居 同姓八寸宋珪亦 矣第二子德立 欲爲繼後 而頓不相議於矣家構 成虛辭 僞着矣名 兩家相議樣以誣呈該 曹至於啓下 其爲情狀 極爲無理 設使大宗立後事是良置 矣身連遭

이 사례는 『경국대전』의 양쪽 아버지가 함께 명해 세운다는 구절을 어겼기 때문에 파계가 진행되었다. 또 養父인 송규가 파계를 청원하는 소지를 올린 것을 보면 파계도 입후처럼 양쪽 집안의 증빙 문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생가를 봉사할 인물이 없을 때 생가에서는 계후자의 파계를 요청했다. 이 때 생가에서는 絶祀를 근거로 들었으며, 명종대의 수교에 의해 파계가 진행되었다. 국가에서 養家보다 생가의 봉사를 더 중요시 한 것이다.

## 2) 養家の 奉祀者 선정

17세기 초까지는 양가의 가계 계승을 위해 행했던 입후라도 계후자가 양가의 모든 제사를 받드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1618년 신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사례는 養家の 봉사를 계후자와 친자 중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1618년 예조의 啓目에 따르면 신려에게는 신유후라는 계후자가 있었으며, 동생인 신응에게는 친자가 있었다. 입후가 되어 계후자로 들어가면 養家の 계승자가 되어 奉祀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다.<sup>112)</sup> 그러나 예조는 親孫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니 신응의 아들에게 가문의 봉사를 맡기고 신유후는 단지 양부모인 신려 부부의 제사만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왕의 윤허에 따라 가문의 봉사자는 신응의 아들이 되었으며, 계후자인 신유후는 양부모의 제사만 담당하게 되었다.<sup>113)</sup>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立後條와 奉祀條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우선 각각의 조항을 살펴보면 봉사조는 적장자와 衆子가 모두 아들이 없어야 첩자가 계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입후조는 적자와 첩자가 모두 없어야 입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명종 8년 일어난 첩자와 계후자 간의 재산 분쟁은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 분쟁에서 사헌부는 봉사는 3대를 봉사하는 것이고, 입후는 부친의 봉사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적장자는 첩자가 있어도 동생의 아들

喪明之歎 餘存只是二男 父子情理勢難許與繼後是去等 況族非大宗八寸之族乎 大概宋珪立後莫重之事 曾無兩家父同命立之端 而僞成公文 違規例 劫奪遠族之子 謀計情狀罪在法典 同宋珪處自筆 自罷成文 粘連呈 上項宋珪如此無理之狀具由 報使以杜後奸 事 所志據粘移到曹是白置有亦 推考當初呈狀 則兩邊所志及族親公緘 皆以着名而其間僞着與否 未能詳知是白在果 但宋以琦以其生父 既不肯許 至於呈狀粘移 則似當罷繼 同宋珪所受立案收取交周爲白乎矣 其僞着與否乙良 令本道查覈治罪何如 崇禎七年閏八月十六日 左副承旨臣陸次知 啓依允.

112)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研究-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p.66.

113) 『繼後臚錄』 卷2, p6, 一. 曹啓目 辛膺繼後子辛有後 只奉辛膺夫妻之祀 辛家祖以上奉祀 則辛膺之子是 親孫依法例奉祀宜當 萬曆四十六年十二月初二日 同副承旨臣李次知 啓依允.



을 입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생의 아들이 없다면 사촌의 아들을 입후하여 봉사를 의탁해야 한다고 했다.<sup>114)</sup> 반면,三公은 첩자가 있을 경우, 동생의 아들로는 입후할 수 있으나 사촌의 아들로는 입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공의 입장은 친동생의 아들은 조부의 손자이지만, 사촌의 아들은 증조의 증손으로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자를 입후하는 것이 대전의 본 뜻이라는 것이었다.<sup>115)</sup> 결국 먼 친척의 아들을 입후한 경우 부친의 봉사만 가능하다는 수교가 내려져 『경국대전』을 보충했다.<sup>116)</sup>

『經國大典註解』에 “적장자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후사를 세우는 경우, 반드시 동생의 아들을 후사로 삼는다. 그런 후에야 할아버지 이상의 제사를 모실 수 있다. 동족의 支子는 비록 후사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할아버지 이상의 제사는 모실 수 없다. 대개 조상은 자기의 손자를 버려두고 형제의 손자에게서 제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동생에게 아들이 없으면 이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sup>117)</sup>라고 실려 있다. 이는 조부 이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생의 아들을 입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생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에는 계후자가 아닌 친손자가 조부모 이상의 봉사를 맡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다. 친손자가 아닌 자에게 봉사를 받으면 조상이 편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계후자는 양부모의 제사만을 받들 뿐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중엽부터 입후가 가계 계승의 원칙이 되면서 친동생의 아들이 아닌 계후자라도 조부모의 제사까지도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sup>118)</sup>

이를 보면 신유후는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신려의 동생인 신응에게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유후가 조부의 제사를 받들 수 없었던 것이다. 신려가문의 봉사 문제를 통해 광해군대까지는 가계 계승에 있어서 혈연을 더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4) 『明宗實錄』 15卷, 明宗8年 9月 9日 1번째 기사.

115) 『明宗實錄』 15卷, 明宗8年 11月 2日 甲辰 2번째 기사.

116) 『受教輯錄』卷3, 禮典, 立後條 “嫡長子有妾子, 非同生弟之子, 勿許爲後”.

117) 『經國大典註解』前集, 禮典, 立後條 “嫡長子, 嫡妾俱無子而立後者, 必以弟之子爲後. 然後得奉祖以上之祀. 同宗支子, 雖得爲後, 不得奉祖以上之祀. 蓋先祖不可捨己孫, 而享於兄弟之孫也. 無弟之子者, 不在此例”.

118)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1983.

### 3) 妾子の 奉祀

한편 적자는 없지만 첩자가 존재해 입후를 하지 못하고 첩자에게 가계의 봉사를 맡기는 경우도 존재했다. 1634년(인조 7) 鄭昌瑞의 처 김씨는 妾孫으로의 봉사를 요청했다. 정창서는 鄭世虎의 아들로 선조의 외숙이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선조 외가 집안의 봉사와 연결되는 문제였으며, 인목대비의 결정에 의해 봉사자가 결정되었다.

鄭昌瑞는 전처와 후처에게 모두 아들이 없었고 동종의 적통에도 입후할만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선조대에 啓를 올려 첩자 국생에게 집안의 봉사를 맡겼다. 정창서가 죽은 이후 국생과 그의 장자가 죽자 정창서의 처 김씨는 국생의 다른 아들인 碩器로 국생의 뒤를 잇게 하려고 했다. 그러자 대비전(인목대비)에서 ‘첩자의 첩자로 승중한 예는 없으니 嫡派 중에 입후에 마땅한 자를 골라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떤지 門長에게 널리 물어 다시 문서를 올리라’는 傳旨를 내렸다. 이에 김씨는 일가 중에는 입후할 만한 이가 없으니 석기로 집안을 잇도록 해달라고 했다. 대비전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비답을 내리면서 석기에게 대종의 봉사를 맡긴다는 문서를 성급해주었다. 그런데 정창서의 孽弟인 弘壽의 손자 錫命이 거짓으로 자신은 良妾의 자손이며 집안을 이을만한 이라고 문중을 속이고 다녔다. 김씨는 국생이 이미 60년 전부터 봉사자로 전수되었고, 선조와 대비전에서 명하신 일이므로 석명이 이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니 봉사를 확실히 해달라고 예조에 요청했다. 예조에서는 정세호의 적장자인 창서가 이미 봉사자로 선택되었고, 봉사권은 마땅히 그의 자손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석기의 봉사는 이미 대비전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왕이 결정한 일이므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며, 선왕 외가의 봉사하는 일과 관련되어 보통의 사대부 집안의 일과 같지 않으니 왕에게 사실을 아뢰며 석기에게 봉사를 전부 맡긴다는 문서를 발급하고자 했다. 이에 왕이 윤허하여 문서를 발급해 주었다.<sup>119)</sup>

119) 『繼後臚錄』 卷1, p.79-80. 一 曹啓目 筋呈故敦寧府都正鄭昌瑞 妻淑夫人金氏所志 內 女矣家翁 前後室俱無子女 同宗絕無嫡族可爲繼後者 宣祖朝入啓 以妾子菊生 家翁先考贈領議政鄭世虎 大宗承重 牢定之後 萬曆丙戌年 分 家翁捐世 三年服闋之後 戊子秋大會 內外門族易世祖上神主改題 以妾子菊生 承重傍題 其時外親河原君·河陵君·廣陽君·安湏·唐恩君·益城君·寧堤君 本族則家翁孽弟崑壽·崑壽及孽 姪德珪·德璋等祭祭 別無他爲 白如乎 菊生身死之後 其長子邦悅無子 且不得其死 其弟碩器法當承襲 是 白乎等以 己巳年 分 大妃殿傳旨 內 妾子之妾子承重未安 嫡派人中擇可當者 收養以祀大宗之意 廣問于 門長 回啓事 內旨據族中他無門長 而義昌君·廣陽夫人及鄭三宰·光績以爲本宗及遠族 嫡派中絕無繼後 可合之人 令元財主 任意區處 事 回啓則 慈殿批答 內 無同宗嫡派 又無遠族嫡派 同宗中 雖有庶孽 與 碩器無異 財主任意區處 事 內旨 導良 上項碩器識字 券不驗 且有孝誠 可堪大宗奉祀 乙仍于 大宗奉祀 傳繼文書成給爲 白有如乎 家翁孽同生弘壽之孫錫命無識悖妄之人 敢生謀奪大宗之計 自稱良妾子孫 瞞 設門中爲 白臥乎 所極爲痛惡爲 白齋 大概錫命之祖母 內資寺婢子也 碩器之母私賤從良人也 公私賤一 樣也 且聞雖賤妾子既爲傳授奉祀 則支宗中嫡派及良妾子 不得奪之者 世多有之 是白昆 菊生六十年來 傳授奉祀 宣廟及大妃殿已爲處置之 事 錫命謀奪設計 極爲無理 曹以具由入啓後 家翁妾孫碩器 亦中 大



정창서 처 김씨는 인조의 허락을 통해 봉사입안을 발급받았다. 봉사입안은 봉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봉사권 상속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 발급받았다.<sup>120)</sup> 봉사입안을 발급받는 인물들은 주로 왕실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에 큰 공을 세워 국가 차원에서 승계를 지속시켜 주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인물이었다.<sup>121)</sup> 국생의 경우에는 선조 외가의 봉사와 관련된 일로 왕실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으며, 첩자라는 신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조를 통해 입안을 발급 받은 것이다. 또 선조 외가의 봉사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전에서 봉사를 결정해주었다. 2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자는 예조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후사와 관련된 사항을 상소할 수 있었고, 왕실의 외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가문에서 요청하기 전에 먼저 조정에서 논의를 거쳐 입후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sup>122)</sup>

지금까지 17세기 초반에 행해진 입후와 파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파계는 생가의 絶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파계와 관련된 수교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입후와 마찬가지로 예조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때 청원자는 대부분 생부모였으며, 생가의 친족에 의해 청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계후자의 봉사 범위의 경우, 親孫이 존재하면 계후자는 양부모의 제사만 받을 수 있었다. 즉, 계후자의 봉사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또한 입후를 하지 않고 첩자를 통해 가계를 계승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첩자로 가게 계승을 할 경우 가문 쇠락의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첩자로 승중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17세기 초까지는 명문가에서도 첩자로 승중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즉, 가계의 봉사자를 선정할 때 17세기 초는 명분보다 혈연을 더 중요시 한 것이다.

宗奉祀傳給次以立案成給亦爲白有昆 據此叅商爲白乎矣 贈領議政鄭世虎嫡長子昌瑞既爲承重 則其奉祀彙嫡間當傳於昌瑞之子孫 昌瑞之弟之子孫 雖是嫡派 不可奪其奉祀是白去等 況錫命乃昌瑞彙弟之子孫 又況當初菊生奉祀 宣廟朝入啓定奪爲白遣 碩器奉祀啓稟於慈殿定奪爲白有昆 既是御決之事 後代族類中何敢任意撓改 而錫命同是賤妾子 敢生謀奪之計爲白臥乎 所論其罪名 則乃是無君不道 其罪極重爲白昆 上項鄭昌瑞妻金氏 以年八十 垂死之年 自見在世不久 恐其身死之後有爭奪之變 欲預爲明白處置 以絕日後相爭之弊 有此呈狀爲白有昆 此係先王外系奉祀事 非如凡士大夫家事 故不敢不啓達爲白去乎 自本曹碩器大宗奉祀傳給立案文字成給何如 崇禎七年四月三十日 同副承旨臣李次知 啓依允.

120) 고민정, 「繼後立案을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 양상에 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38권, 2017, p.164~166.

121) 최연숙,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研究』,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4, P.179.

122) 고민정, 「17세기 장자의 계후와 그 특권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31권, 2013;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정신문화연구』 39권, 2016.

## IV. 맺음말

『계후등록』을 자료로 하여 입후가 증가하기 시작한 17세기 초반의 입후양상과 실태에 대한 검토하였다. 조선의 입후법은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비되었다. 세종대에 承重에 관한 문제로 시작된 논의는 입후제도의 성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당시의 입후제도는 허점이 많았고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해 『경국대전』의 입후조에 제도로 정착했다. 『경국대전』의 입후조는 조선후기까지 입후의 기준이 되었지만 시대에 따라 변형되어 법전에 수록되었다. 입후법의 해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는 가계계승에 관한 일이었다. 계후자를 들인 후 친자가 태어날 경우, 가계의 계승을 누구에게 시킬 것인지가 문제시 되었다. 명종대와 선조대에는 친자를 우선시 했지만, 인조와 현종대에는 계후자를 우선시 했다. 또 현종은 수교를 통해 계후자의 봉사권을 인정해주었다. 이는 가계 계승에 있어서 계후자의 권위가 강해짐을 보여주는 변화였다. 현종의 결정은 부자간의 혈연을 우선시하던 관습에서 의리를 더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입후법의 해석의 문제와 더불어 법전의 변화도 생겼다. 영조대 전까지의 입후 기록을 살펴보면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이후 진행된 입후는 법외로 구분되어 『속대전』에도 규정되었다. 하지만 1765년(영조 41)에 한쪽 부모가 사망하였더라도 입후를 허락한다는 수교가 내려지고,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에 영조대의 수교가 수록되면서 이후에는 일반적인 입후로 인정되었다. 즉 입후에 변화가 생기자 이를 인정하고 법제적인 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계후등록』은 예조에서 입후의 사실을 기록해 후일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 등록은 17세기~19세기의 입후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 권의 등록 중 권1은 인조대의 기록이며, 권2는 광해군대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권1과 2는 서로 순서를 바꿔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권의 『계후등록』에 기록된 양부와 생부의 관계를 보면 친형제간이 가장 많았으며, 4촌·6촌·8촌 순이었다. 이는 兄亡弟及의 원칙과 혈연 상 가장 가까운 이의 아들을 입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16세기부터 4촌 및 6촌의 아들로 입후해 봉사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를 통해 동생의 아들이 있더라도 다른 이의 아들을 입후해 봉사를 행한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친족에 대한 호칭을 통해 입후의 동의자로 동성친 뿐 아니라 이성친도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17세기 초

까지는 입후의 행위에서 이성친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입후는 양부 또는 양부의 처에 의해 청원되었다. 이는 입후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예조에 의해 일반계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입후를 나라에 고하기 전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생부나 다른 친족들에 의해 청원되었다. 이러한 경우의 입후를 예조는 법외로 분류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17세기 초반 입후를 행하는 층은 대부분 현직관료들이었다. 현직관료들은 다른 신분들에 비해 입후를 청원하기 편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후자로는 동성 친족의 2자와 3자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들은 장자에 비해 가계 계승의 임무가 없었기 때문에 계후자로 많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당시 행해진 입후의 대상자에는 동성 친족의 첩자와 독자도 존재했다. 독자는 입후법에 따르면 다른 이의 계후자가 될 수 없으나 청원자가 봉사자일 경우 허락되기도 했다.

양가의 계승을 위한 입후와 마찬가지로 생가의 絶祀를 막기 위한 파계도 존재했다. 이는 파계와 관련된 수교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입후와 마찬가지로 예조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때 청원자는 대부분 생부모였으며, 생가의 친족에 의해 청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親孫이 존재하면 계후자는 양부모의 제사만 만들 수 있었다. 즉, 계후자의 봉사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또한 입후를 하지 않고 첩자를 통해 가계를 계승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첩자로 가계 계승을 할 경우 가문 쇠락의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첩자로 승중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17세기 초까지는 명문가에서도 첩자로 승중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즉, 가계의 봉사자를 선정할 때 17세기 초는 명분보다 혈연을 더 중요시했다. 이를 보면 17세기는 혈연 중시에서 명분 중시로 넘어가던 과도기인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자료

- 『經國大典』, 국사편찬위원회(<http://db.history.go.kr/law/>).
- 『經國大典註解』, 국사편찬위원회(<http://db.history.go.kr/law/>).
- 『繼後臚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http://db.history.go.kr/KOREA/>).
- 『國朝人物考』
- 『大典通編』, 국사편찬위원회(<http://db.history.go.kr/law/>).
- 『富平府邑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續大典』, 국사편찬위원회(<http://db.history.go.kr/law/>).
- 『受教輯錄』, 국사편찬위원회(<http://db.history.go.kr/law/>).
-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http://sjw.history.go.kr/main.do>).
- 『疑禮問解』,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日省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yoksa.aks.ac.kr/main.jsp>).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世宗實錄』, 『端宗實錄』, 『成宗實錄』,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顯宗實錄』.
- 『海南尹氏大同譜』, 해남윤씨중앙종친회(<http://www.haenamyun.com/>).

### 2.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두산동아, 2009.
- 마르티나도이힐러 저, 이훈상 역,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화』, 아카넷, 2003.
- 마크피터슨 저, 김혜정 역, 『유교사회의 창출』, 일조각, 2000.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 박경,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2011.

- 정구복외, 『朝鮮前期古文書集成』,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지두헌,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 \_\_\_\_\_, 『한국의 가족과 사회』, 경인문화사, 2009.
- 坪内玲子, 『繼承の人口社會學』, ミネルヴァ書房, 2001.
- Ann Beth Waltner, 『Getting an heir: Adoption and the construction of kinship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 3. 논문류

- 강제훈, 「조선초기 家系繼承 논의를 통해 본 姜希孟家の 정치적 성장」, 『조선시대사학보』 42권.
-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研究-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 \_\_\_\_\_, 「17세기 장자의 계후와 그 특권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31권, 2013.
- \_\_\_\_\_, 「17~18세기 嫡孫承重에 관한 일고찰」, 『조선시대사학보』 67권, 2013.
- \_\_\_\_\_, 「『繼後臚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13권, 2014.
- \_\_\_\_\_, 「조선후기 입후 방식과 계후자의 향렬에 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34권, 2015.
- \_\_\_\_\_, 「조선후기 입후절차에 관한 연구-生家 및 養家 부모의 사망문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17권, 2015.
- \_\_\_\_\_,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정신문화연구』 39권, 2016.
- \_\_\_\_\_, 「繼後立案을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 양상에 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38권, 2017.
- 구덕희, 「법전으로 역사읽기-輯錄류 법전의 성격-」, 『역사와현실』 46권, 2002.
-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권, 2008.
- \_\_\_\_\_,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현실』 73권, 2009.
- 김명자, 「16~17세기 河回 豊山柳氏家の 宗法 수용 과정」, 『대구사학』 96권, 2009.
- 김영환, 「조선시대 역병발생기록에 관한 분석연구」, 『보건학논집』 27권, 2001.
- 김윤정, 「조선중기 제사승계와 兄亡弟及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권, 2002.

- 김인걸, 「各司謄錄 資料의 基礎調査 및 研究」,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보고서, 1998.
- 김 혁, 「藏書閣 소장 謄錄의 문헌학적 특성」, 『장서각』 4권, 2000.
- \_\_\_\_\_,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서지학보』 26권, 2002.
- 노명호,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8.
- 박 경, 『조선 전기 收養·侍養의 실태와 立後法の 정착』,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15세기 立後法の 운용과 繼後立案」, 『역사와현실』 59권, 2006.
- \_\_\_\_\_, 「과계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장서각 소장 『계후등록』을 중심으로-」, 『장서각』, 2011.
- 박미해, 「17세기 養子の 제사상속과 재산상속」, 『한국사회학』 33권, 1999.
- 박수미, 「양자제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가족구조와 가계계승」, 『한국인구학』 30권, 2007.
- 박용옥, 「朝鮮太宗朝 妻妾分辨考」, 『한국사연구』 14권, 1976.
- 박종천, 「상·제례의 한국적 전개와 유교의례의 문화적 영향」, 『국학연구』 17권, 한국국학진흥원, 2010.
- \_\_\_\_\_, 「조선 후기 유교적 가족질서의 확산과 의례적 양상-立後와 入養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32권, 2012.
- 배재홍, 『조선후기의 庶孽 許通과 身分地位의 변동』,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5.
- 연갑수,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研究」, 『외대사학』 12권, 2000.
- \_\_\_\_\_, 「19세기 宗室의 단절 위기와 宗親府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51권, 2009.
- 이상백, 「嫡庶差等の 淵源에 대한 一問題」, 『진단학보』 1권, 1934.
- 이중서, 『14~16세기 韓國의 親族用語와 日常 親族關係』,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 이형중, 「조선시대 謄錄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 장병인, 「고려시대 혼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990.
- \_\_\_\_\_,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 『역사와현실』 58권, 2005.
- 정공식, 『조선초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 \_\_\_\_\_, 「16세기 봉사재산의 실태」, 『고문서연구』 9·10 합권, 1996.
- \_\_\_\_\_, 「16세기 첩자의 제사 승계권」, 『사회와역사』 53권, 1998.

- \_\_\_\_\_, 「조선전기 朱子家禮의 수용과 祭祀承繼 관념」, 『역사민속학』 12권, 2001.
- \_\_\_\_\_, 「朝鮮時代の 家系繼承法制」, 『서울대학교법학』 51권, 2010.
- 정승모, 「동중촌락의 형성 배경」, 『정신문화연구』 16권, 1993.
- 지두환, 「조선전기 종법제도 이해과정」, 『태동고전연구』 1권, 1985.
- 최연숙,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研究』,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5.
- 최재석, 「朝鮮時代の 養子制와 親族組織」, 『역사학보』 86권, 1980.
- 한상우, 「『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고문서연구』 51권, 2017.
- 허원영, 「한말 한 종가의 立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 東萊鄭氏 鄭蘭宗 종가의 고문서 자료를 통한 재구성」, 『사회와역사』 75권, 2007.
- 허홍식, 「高麗時代の 夫妻形態와 그 變遷」, 『고려사회사연구』, 1981.